

감사사례집 “발췌본”
(최근 5년간 국립대학의 교육부 종합감사 분야별 정리)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조직·인사】		
전임교원 채용 심사위원 부당 참여 등 (2019. 한국교통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자의공동연구자인 교수 A을 전공면접심사위원으로 임명하여 심사를 하게 하고, 교수 A는 허위 내용의 서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제출 후 전공면접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기피신청을 하지 아니함 <p style="text-align: center;">【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제2항, 한국교통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채용 전형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징계(1명) ◦ 경고(2명) ◦ 주의(3명)
전임교원 채용 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2019. 순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하였던 교원 2명을 전공일치심사위원으로 위촉 <p style="text-align: center;">【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2항, 순천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12조, 순천대학교 2018-1학기 교수 공개채용 전형업무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4명)
전임교원 채용 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2018. 충북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임교원 신규채용 심사위원 위촉 시 지원자와 공동으로 연구실적물을 저술한 교수 2명을 기초 및 전공심사위원으로 위촉 <p style="text-align: center;">【교육공무원법 제11조, 충북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 기본지침 제1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4명)
전임교원 신규채용 기초심사 부적정 (2021. 금오공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임교원 신규채용 시 초빙분야가 동일하고, 교원 충원사유 및 채용분야가 동일하며, 신임 교원이 담당할 교과목 및 지원자의 심사자료가 모두 동일한데도 2020학년도 2학기에는 “부적격”으로 평가하고, 2021학년도 1학기에는 “적격”으로 평가 <p style="text-align: center;">【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2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 제1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4명)
전임교원 신규채용 기초심사 부적정 (2020. 강릉원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임교원 신규채용 시 채용분야 및 출신학과가 동일한데도 ‘학사·석사·박사 출신학과 부합도’에서 2018학년도 2학기에는 “5.0점”으로 평가하고, 2019학년도 1학기에는 “2.5점”으로 평가 <p style="text-align: center;">【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2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 제1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4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전임교원 신규채용 기초심사 부적정 (2020. 안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임교원 신규채용 시 초빙분야 및 지원자격이 동일하고, 채용분야 및 채용사유 또한 동일함에도 2017학년도 2학기에는 “적격”으로 평가하고, 2018학년도 1학기에는 “부적격”으로 평가 <p style="text-align: center;">【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2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의(1명)
전임교원 신규채용 기초심사 부적정 (2019. 부경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임교원 신규채용 시 초빙분야가 동일하고, 교원 충원사유 및 채용분야가 동일하며, 신입 교원이 담당할 교과목 및 지원자의 심사자료가 모두 동일함에도 2014학년도 1학기에는 “적격”으로 평가하고, 2학기에는 “부적격”으로 평가 <p style="text-align: center;">【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2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 제1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의(3명)
일반직 공무원 정원 초과 승진 부당 (2020. 강릉원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년과 2019년 2차례에 걸쳐 정원을 초과하여 3명을 승진 임용 <p style="text-align: center;">【국가공무원법 제56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p>	<p>[2017년 승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징계(1명) 경고(1명) 주의(1명) <p>[2018년 승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징계(2명) 경고(1명) 주의(1명) <p>[2017, 2019년 승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의(1명)
일반직 공무원 정원초과 승진임용 (2019. 한국교통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년에 정원을 초과하여 1명을 승진 임용 <p style="text-align: center;">【국가공무원법 제56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징계(2명) 경고(2명) 주의(1명)
국가공무원 신규채용(전입) 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2021. 금오공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지 아니하고, 그 중 1명은 시험 주관 소속 공무원으로 위촉 <p style="text-align: center;">【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Ⅱ1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주의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예능 실기고사 평가위원 구성 부적정 (2020. 안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3개 전공의 수시모집 실기고사 시 내부인만으로 평가위원 구성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 2018학년도 및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보 -향후 대학입학전형 관련 예·체능 실기고사의 평가위원 구성 시 예·체능 실기고사 관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평가위원 구성 조건을 반영하기 바람
채용 전 비위면직 未확인 (2021. 금오공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용예정자 2명에 대하여 채용 이후 비위면직 여부 조회·확인 【비위면직(파면·해임)자 공직 재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보 -채용예정자에 대하여 비위면직여부를 확인 한 후 채용하기 바람
의원면직 제한대상 및 채용대상자의 비위면직 未조회·未확인 (2020. 강릉원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원면직을 신청한 조교 34명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자 해당 여부를 경찰청에만 의뢰하여 확인하고 면직 처리 채용예정자 4명에 대하여 비위면직 여부 未조회·未확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5조 및 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의(15명)
의원면직 제한대상 未조회·未확인 (2020. 춘천교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직원 8명에 대하여 비위면직 여부 未조회·未확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5조 및 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의(6명)
의원면직 제한대상 및 채용예정자 비위면직 未조회·未확인 (2019. 한국교통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원면직 제한대상 해당여부 未조회·未확인】 --①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수 및 조교 6명에 대하여 비위면직 여부 未조회·未확인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4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5조 및 제6조】 【채용예정 공무원 비위면직 조회·확인】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②관련】 주의(3명) 【①관련】 주의(9명) 【②관련】 주의(10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예정인 공무원 20명에 대하여 비위면직 여부 未조회·未확인 <p>【비위면직(파면·해임)자 공직 재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 제6조】</p>	
<p>의원면직 제한대상 및 채용예정자 비위면직 未조회·未확인 (2019. 부경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면직 신청자 94명의 의원면직 제한대상자 未조회·未확인 및 채용예정자 18명에 대한 비위면직 여부 未조회·未확인 <p>【舊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2016. 8. 31. 폐지)제3조, 제4조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2016. 8. 31. 시행) 제5조, 제6조, 비위면직(파면·해임)자 공직 재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 제6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8명) ◦ 주의(6명)
<p>계약직 채용 면접위원의 이해관계자 未신고 (2021. 금오공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 제자가 전문계약직 채용에 응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장에게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면접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5개 평정요소에 각각 ‘상’으로 평가 <p>【금오공과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1명)
<p>의예과 및 전문대학원(의전원, 법전원) 면접전형 절차 부적정 (2019. 제주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의예과 및 전문대학원(의전원, 법전원)에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을 혼합하여 면접 실시 및 면접 표준점수 혼합 산출 <p>【고등교육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지원자를 처음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구분하여 전형을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p>계약직 채용 응시자격 우대사항 부적정 (2021. 금오공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직 채용 시 자격요건의 우대사항으로 ‘신체 건강한 자, 야외 활동 가능한 자’ 등 차별적 요소가 포함된 내용으로 공고 <p>【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제1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0조제1항, 금오공과대학교 대학회계직원 인사규정 제4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3명) ◦ 주의(1명)
<p>계약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교 및 계약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직원이 계약직 채용시험에 응시하면서 학력 기재란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3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부당 (2019. 순천대)	<p>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채용 시 이력서 및 신원진술서 상의 최종 학력이 다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채용</p> <p>◦ 또한, 위 직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 시 아무런 평가를 하지 않은 채 △△처장 내부결재만으로 전환</p> <p>【순천대학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지침 제7조·제9조·제20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5명) ◦ 통보(문책_징계1명)
산학협력단 부설사업단 직원 부당 채용 등 (2020. 강릉원주대)	<p>【부설사업단 직원 채용절차 부적정】 -----①</p> <p>◦ 직원 26명을 채용하면서 면접평가 위원 구성을 외부위원 1/2미만으로 구성하여 면접을 진행하거나 면접을 未실시, 합격자에 대해서 결격사유 조회 및 성범죄 경력 여부 등을 未확인</p> <p>【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제5조,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p> <p>【동해안해양생물자원연구센터 연구원 부당 채용】 -②</p> <p>◦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연구원 1명을 채용</p> <p>【국가공무원법 제56조,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제5조, 강릉원주대학교 동해안해양생물자원연구센터 규정 제6조제2항 및 별지 2호】</p> <p>【음악교육지원센터 직원 부당 채용 등】 -----③</p> <p>◦ 자격요건이 없는 학사학위가 없는 자를 합격시키고 규정에 없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문서를 시행하여 500천원을 지급받았으며, 강사 8명을 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 여부 未확인</p>	<p>< ① 관련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6명) <p>< ① , ② 관련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징계(1명) <p>< ② 관련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규정 등에 따라 탈락자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채용 무효 등 조치하기 바람 <p><별도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발 【① , ③ 관련】 ◦ 중징계(1명)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절상여금 500천원을 회수하여 관련 회계로 세입조치하기 바람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 align="center">【국가공무원법 제56조,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제5조, 강릉원주대학교 음악교육지원센터 행정연구원 채용 공고, 강릉원주대학교 음악교육지원센터 운영규정 제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p>	
<p>계약직원 채용 부적정 (2019. 한국교통대)</p>	<p>【충주생활관 계약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경쟁 채용절차없이 기존 일용인부로 사역중인 OO을 면접심사만을 통해 계약직원으로 채용 <p align="center">【한국교통대학교 계약직원 관리지침 제8조】</p> <p>【산학협력단 및 부속시설 계약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공고내용과 다르게 채용직렬 및 채용인원을 임의로 변경하여 직원 총 6명을 채용하고 계약직원 채용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아니하고 직원 총 95명을 채용 <p align="center">【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 인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내지 제4조,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제4조의2】</p>	<p align="center">【①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2명) <p align="center">【②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14명)
<p>산학협력단 계약직원 채용 부당 (2020. 안동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공고 요건과 달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의 자격증이 없는 자를 1차 최종 채용하면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7명을 불합격 시킴 <p align="center">【국가공무원법 56조, 안동대학교 0정관 제8조, 안동대학교 0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8조제3항, 안동대학교 지역연계협력본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징계(2명) ◦ 경고(1명)
<p>시간강사 위촉 부당 (2020. 안동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1명이 과목 관련 전공자가 아니며 강의경력이 없는 자신의 아들을 해당 과목의 시간강사로 추천하고, 부자관계임을 알고 있던 학과장은 학위 및 전공, 저서 실적에 대한 구두설명만으로 시간강사 추천 대상자로 확정 <p align="center">【국가공무원법 56조 및 59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안동대학교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제6조 및 제9조, 안동대학교 겸임교원 등의 임용에 관한 규정 제3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징계(2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강사임용심사위원 직연(職緣) 관계자 미제척 (2020. 춘천교대)	◦ 2019. 2학기부터 2020. 1학기까지 총 2회에 걸쳐 강사임용심사에서 제척대상자인 교수 3명만으로 심사위원을 구성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8, 춘천교육대학교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지침 제10조, 춘천교육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6항】	◦ 주의(2명)
시간강사(자격미달자) 위촉 부적정 (2019. 제주대)	◦ 자격 요건에 미달되는 54명(118회)을 학과장의 추천서만으로 시간강사로 위촉 【제주대학교 비전임교원 운영지침 제65조 및 제71조】	◦ 기관경고
조교채용 부적정 (2020. 안동대)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조교 2명을 신규임용 채용공고 절차없이 신규임용 대상자를 결정 【교육공무원법 제2조,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안동대학교 조교 인사관리 지침 제7조】	◦ 경고(2명)
한국어 강사 채용 부적정 (2019. 제주대)	◦ 기 채용된 한국어 강사 36명에 대해 별도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채용계약을 체결 【제주대학교 한국어과정 운영 지침 제25조】	◦ 기관경고 ◦ 통보 - 「한국어과정 운영지침」 등에 따라 세부기준을 명확하게 정한 채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한국어 강사 채용 시 적정을 기하기 바람
국제교류어학원 무기계약직 채용 부당 (2019. 순천대)	◦ 순천대학교 국제교류어학원이 무기계약직원 1명을 신규 채용하면서 일체의 전형절차 없이 국제교류어학원 조교 ○○○을 무기계약직원으로 채용 【순천대학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지침 제9조】	◦ 경징계(1명) ◦ 경고(2명)
기초교육원 계약직 연구원 채용 부당	◦ 기초교육원 내 CI센터에서 근무할 계약직 연구원 채용 시 서류심사에서 자격요건(석사이상) 미달(학사학위 소지자)로 0점을 받은 자 채용	◦ 경징계(2명) ◦ 주의(2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2018. 충북대)	<p>【국가공무원법 제56조, 충북대학교 자체 계약직 관리·운영 지침 제5조, 충북대학교 계약직 연구원(CI센터) 모집공고(2015. 2. 4.)】</p>	
<p>접수 마감 이후 제출한 연구실적물 인정 부적정 (2020. 금오공대)</p>	<p>◦ 합격처리한 기 접수된 연구실적물이 임용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접수 마감 이후 제출한 연구실적물을 인정하여 최종합격자로 결정 【금오공과대학교 교원신규채용 세부지침 제2조, 제6조, 제10조, 금오공과대학교 교육공무원 임용규정 제 21조, 제22조, 제23조】</p>	<p>◦ 경고(4명) ◦ 통보 -채용공고상의 지원 자격과 교육공무원 임용규정의 임용자격 및 교원신규채용 세부지침의 지원 자격을 통일시켜 채용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기 바람</p>
<p>연구년 교원 선발 부적정 등 (2019. 부경대)</p>	<p>◦ 연구업적 미달 등으로 연구년 교원 선발에서 탈락한 교원 19명을 연구년 교원으로 추가 선발 【부경대학교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규정 제65조, 제66조, 67조, 부경대학교 교원 연구년 운영지침】</p>	<p>◦ 경고(9명) ◦ 주의(3명)</p>
<p>연구년 교수 연구실적물 未제출 및 지연 제출 (2018. 충북대)</p>	<p>◦ '14~'15년 연구년 교수로 선정된 교수 11명이 연구실적물 未제출 ◦ '12~'15년 연구년 교수로 선정된 교수 17명이 연구실적물 지연 제출 【충북대학교 연구년제 연구교수 규정 제2조 및 제6조】</p>	<p>◦ 경고(11명) ◦ 주의(17명)</p>
<p>의원면직 제한대상 여부 및 채용예정자 비위면직 여부 未조회·확인 (2019. 순천대)</p>	<p>◦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직원 30명에 대하여 의원면직 제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회·확인하지 않거나, 일부기관에만 조회·확인한 채 면직 처리 ◦ 2015. 7.부터 2018. 1.까지 23명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면서 비위면직자 해당 여부 未조회·확인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4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5조 및 제6조, 비위면직자 공직 재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 제6조】</p>	<p>◦ 경고(6명) ◦ 주의(10명)</p>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채용예정자 비위면직 여부 未조회·확인 (2018. 충북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2.부터 '17.6.까지 16명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면서 비위면직자 해당 여부 未조회 <p style="text-align: center;">【비위면직(파면·해임)자 공직 재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 제6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7명)
하부조직 과다 설치·운영 (2019. 제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에서 정한 기준(8개)을 초과하여 15개 과(담당관) 설치·운영 <p style="text-align: center;">【국립학교 설치령(대통령령) 제9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학교 설치령에서 정한 기준대로 하부조직을 설치·운영하기 바람
하부조직 과다 설치·운영 (2019. 군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학교 설치령」의 범위를 초과하여 하부조직 설치·운영 <p style="text-align: center;">【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학교 설치령에서 정한 기준대로 하부조직을 설치·운영하기 바람
대학 하부조직 과다 설치·운영 (2019. 순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에서 정한 기준(10개)을 초과하여 11개 과(담당관) 설치·운영 <p style="text-align: center;">【국립학교 설치령(대통령령) 제9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학교 설치령에서 정한 기준대로 하부조직을 설치·운영하기 바람 <p style="text-align: center;"><별도조치> (혁신행정담당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학교 설치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하부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하부조직 과다 설치·운영 (2018. 충북대)</p>	<p>◦ 과(담당관) 단위 하부 조직 기준(11개과)을 초과하여 14개 과에서 15개 과로 운영</p> <p>【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 및 동 설치령 별표 6】</p>	<p>◦ 기관경고</p> <p>◦ 통보</p> <p>- 국립학교 설치령에 서 정한 기준대로 하 부 조직을 설치·운영하 기 바람</p> <p><별도조치></p> <p>◦ 통보(기획조정실)</p> <p>- 국립학교 설치령에 서 정한 기준을 초과 하여 하부조직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람</p>
<p>대우공무원 선발 부적정 (2019. 한국교통대)</p>	<p>◦ 대우공무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도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고 대우공무원 수당 115,200원을 지급</p> <p>【공무원 임용령 제31조 제5항, 제35조의3 제1항, 공무원 임용규칙 제19조 및 제 21조】</p>	<p>◦ 경고(2명)</p> <p>◦ 주의(2명)</p>
<p>대우공무원 선발 부적정 (2019. 부경대)</p>	<p>◦ ‘건축’ 처분을 받아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는데 필요한 경력에 6개월이 미달됨에도 조기 선발</p> <p>【공무원 임용령 제31조 제2항, 제32조, 제35조의3 및 공무원 임용규칙 제19조】</p>	<p>◦ 경고(3명)</p>
<p>명예교수 추대 부적정 (2018. 충북대)</p>	<p>◦ 교수 1명이 연구결과물을 정년퇴임(‘17.8.31.) 전까지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17.9.30.까지 연구결과물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17.9.1. 명예교수 추대</p> <p>- 위 교수가 연구비를 반납하지 않는 등 처분을 불이행하고 있음에도 명예교수 자격상실, 연구비 회수 등 未조치</p> <p>【충북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 제11조 내지 제14조】</p>	<p>◦ 경고(4명)</p> <p>◦ 통보</p> <p>- 자체 규정에 따라 ○○○의 명예교수 자격에 대해 재심사하기 바람</p>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명예교수 강의담당기간 未준수 및 개설과목 수 초과 (2019. 제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예교수 6명이 강의담당기간 및 과목 수를 초과하여 강의를 담당 <p style="text-align: center;">【제주대학교 비전임 교원 운영 지침 제11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주의
명예교수 강의 시수 초과 배정 (2019. 한국교통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예교수 2명이 강의시수를 초과하여 강의를 담당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교통대학교 겸임교원 등의 인사에 관한 규정 제29조 및 제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행정면책
명예교수 강의 연한 未준수 (2019. 부경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된 명예교수 3명이 총장의 강의 연한 연장 승인 없이 강의 담당 <p style="text-align: center;">【부경대학교 비전임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 제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4명)
명예교수 강의시수 초과 부적정 (2018. 충북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예교수 2명에게 강의시수를 초과하여 강의 배정 <p style="text-align: center;">【충북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 제14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행정면책
기소유예 통보자 징계 미요구 (2020. 강릉원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범죄사건 중 기소유예 통보된 3건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내부종결로 처리 <p style="text-align: center;">【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3조·제78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6명)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 부적정 (2020. 안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범죄사건 중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 통보된 사건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내부종결로 처리 <p style="text-align: center;">【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3조·제78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5명)
공무원 범죄통보사건 처리 부당 (2019. 한국교통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 1명의 ‘구약식 처분’ 및 교수 1명의 ‘공소권 없음’ 처분을 통보받고도 징계의결 요구 없이 불문으로 처리하고 <p style="text-align: center;">【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및 제78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 제4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한국교통대학교 위임전결 규정 제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징계(1명) ◦ 경고(4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 부적정 (2019. 군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수 1명의 '구약식 처분'을 통보받고도 징계의결 요구 없이 '경고'처분 <p>【비위면직(파면·해임)자 공직 재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 제6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3명)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 부적정 (2019. 순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 범죄사건 중 기소유예 및 공소제기(구약식) 결정 통보된 5건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불문(내부종결)으로 처리 <p>【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3조·제78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15명)
성범죄 경력 未확인 (2019. 한국교통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 8.부터 2019. 11.까지 계약직원 44명을 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 未확인 <p>【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및 제5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예정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한 후 채용하기 바람
성범죄 경력 未확인 (2018. 충북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 1.부터 2017. 1.까지 21명을 시간제 기간제교사 등으로 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 未확인 <p>【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예정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한 후 채용하기 바람
교육공무원 징계 감경 부당 (2020. 안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폭력 범죄 행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데도, 징계를 감경하여 정직3개월로 처분의결하고 직근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심사 未청구 <p>【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 같은 규칙 별표,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0조의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징계(1명) 경고(1명)
교육공무원 징계업무 처리 부적정 (2019. 한국교통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징계의결을 요구하고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임의로 차용하여 불문경고로 의결한 것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재심사 未요구 <p>【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 교육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3명)
징계처분일자 임의 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 5. 24.에 징계처분을 하였음에도 수의과대학장 명의의 '교육공무원 징계처분 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2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2019. 제주대)	요청'만으로 징계처분일자를 2016. 6. 22.로 정정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7조제1항】	
교육공무원 징계업무 처리 부적정 (2019. 순천대)	◦ ○○과 교수 □□□에 대해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으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다음 감경사유가 없음에도 '불문경고'로 결정 【교육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 경고(4명)
징계협이자 출석 통지 부적정 (2019. 부경대)	◦ 징계협이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기준일보다 2일 지연 【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제1항】	◦ 주의(3명)
징계 처분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지급 부적정 (2019. 군산대)	◦ 징계처분(정직 1월) 기간에 대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923,500원 지급 【「군산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규정 시행세칙」 제8조】	◦ 주의(2명) ◦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합계 9 2 3 , 5 0 0 원 을 ○ ○ ○ 으 로 부 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징계처분자 호봉 재확정 부적정 (2020. 강릉원주대)	◦ 음주운전으로 '견책'처분을 받은 직원 1명의 승급제한기간 6월을 징계말소일 전 호봉에 산입함에 따라 봉급 677,880원 과다 지급 【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 내지 제15조】	◦ 주의(3명) ◦ 시정(회수) - 호봉승급 오류로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 6 7 7 , 8 8 0 원 을 관 련 자 로 부 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징계처분자 호봉 재확정 부적정 (2018. 충북대)	◦ 음주운전으로 '감봉 1월'처분을 받은 직원 1명의 호봉재확정을 1개월 늦게 실시함에 따라 봉급 946,190원 과소 지급 【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 내지 제15조】	◦ 주의(3명) ◦ 통보 - 호봉승급 오류로 과소 지급된 봉급 9 4 6 , 1 9 0 원 을 ○ ○ ○ 에 게 지 급 하 기 바람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징계처분기록 말소 未이행 (2019. 순천대)	◦ 2018. 5. 감사일 현재까지 교원 9명의 징계처분 기록 말소 未이행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정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 제1호】	◦ 기관경고
전임교원 신규채용 서류접수수당 지급 부적정 (2018. 충북대)	◦ 전임교원 신규채용 업무 담당자(23명)에게 서류접수수당 명목으로 합계 5,120천원 지급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제22조 및 제36조, 2015~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 주의(12명) ◦ 시정(회수) - 부당하게 지급된 서류접수수당 합계 5,120천원을 학사지원과 행정조교○○○ 등 당사자들로 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학예연구직원 채용 부적정 (2019. 군산대)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학예연구직원 채용과정에서 지원자격, 공고기간을 지침과 달리 공고하여 군산대학교 졸업자 4명 채용 【군산대학교 박물관 학술용역비 및 학예연구직원 운영 지침 제2조, 제9조 및 군산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6조】	◦ 경고(3명)
공무원 성과평가 부적정 (2020. 강릉원주대)	◦ 2017년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시 평가단위기관의 서열명부 순위와 다르게 심의 및 확정 ◦ 2017. 7. 31.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면서 실적 가점 未부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2조, 제27조,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요령(교육부)】	◦ 경고(3명)
공무원 성과평가 부적정 (2020. 춘천교대)	◦ 2019. 1. 31.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면서 실적 가점 未부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조,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요령(교육부)】	◦ 경고(3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근무성적 평정 부적정 등 (2019. 한국교통대)</p>	<p>【실적가점 평정에 관한 사항】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 7. 31.부터 2019. 7. 31.까지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면서 실적 가점 未부여 <p>【직무수행능력 평정에 관한 사항】 -----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근무성적평정을 하면서 18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감점 未부여 <p>【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조,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요령(교육부)】</p>	<p>【①,②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3명) <p>【②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의(6명)
<p>근무성적 평정 부적정 (2019. 제주대)</p>	<p>【실적가점에 관한 사항】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 1.부터 2019. 7.까지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면서 실적 가점 未부여 <p>【감점에 관한 사항】 -----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년 상반기부터 2018년 하반기까지 근무성적평정을 하면서 감점 未부여 또는 기준보다 많게 감점 <p>【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조,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요령(교육부)】</p>	<p>【①,②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4명) <p>【①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의(2명) <p>【②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의(2명)
<p>근무성적 평정 부적정 (2019. 순천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 7. 31.부터 2018. 1. 31.까지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면서 실적 가점 未부여 <p>【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조,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요령(교육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3명) 주의(4명)
<p>근무성적 평정 부적정 (2019. 군산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4년도 상반기, 소속 공무원 2명의 근무성적을 평가단위별 서열명부 순위와 다르게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확정 <p>【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요령(교육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2명)
<p>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서 未제출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 3명이 총 5회의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미제출 및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미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1명) 주의(2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2021. 금오공대)	【교육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8조, 금오공과대학교 교원국외여행 규정 제15조】	
단기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지연 및 未제출 (2020. 강릉원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3명이 총 4건에 대하여 단기해외연수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지연 제출하거나 未제출 <p style="text-align: center;">【강릉원주대학교 단기 해외연수 지원지침 제8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1명) ◦ 주의(2명)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관련 교수 3명으로부터 결과보고서를 제출받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기 바람
未허가 공무외 국외여행 등 (2021. 금오공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대학과장 허가 없이 공무외 국외여행 실시(교원 16명) <p style="text-align: center;">【국가공무원법 제58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3조, 금오공과대학교 교원국외여행 규정 제18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16명)
복무 未처리 공무외 국외여행 등 (2020. 안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교직원 5명이 복무처리 없이 공무외 국외여행 실시하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교직원 3명이 복무 미처리 공무외 국외여행일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 347,790원과 결근처리 시 공제되어야 할 보수 229,020원 합계 576,810원을 과다 수령 <p style="text-align: center;">【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3조 및 제2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8조, 안동대학교 무기계약직 취업규칙 제5조, 제15조 및 제2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3명) ◦ 주의(2명)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외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복무처리를 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하게 지급 받은 연가보상비 347,790원, 결근 처리시 공제해야 할 보수 229,020원, 합계 576,810원을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관 련 자 들 로 부 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p>국외여행 복무 未처리 (2020. 춘천교대)</p>	<p>◦ 복무처리 없이 국외여행 실시(교원 4명)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 춘천교육대학교 공무(외) 국외출장(여행) 지침】</p>	<p>◦ 주의(4명)</p>
<p>교원 복무 未처리 공무외 국외여행 등 (2019. 한국교통대)</p>	<p>【교원 복무 未관처리 공무외 국외여행】 ----① ◦ 교원 64명이 총 134회에 걸쳐 대학장의 허가 등 복무처리 없이 공무외 국외여행 실시 【국가공무원법 제58조, 한국교통대학교 교육공무원 복무처리 요령 제6장】 【국의 자율연수 신청 및 결과보고 부적정】 --② ◦ 교원 52명이 총 65회의 국외 자율연수를 실시하면서 기한보다 최소 2일에서 최대 20일 늦게 허가를 신청하고 결과보고서 未 제출 또는 최대 99일까지 지연제출 【한국교통대학교 교육공무원 복무처리 요령 제6장】</p>	<p>【①,②관련】 ◦ 경고(2명) 【①관련】 ◦ 경징계(1명) ◦ 경고(12명) ◦ 주의(44명) 【②관련】 ◦ 기관경고 ◦ 경고(8명)</p>
<p>未승인 공무외 국외여행 실시 (2019. 군산대)</p>	<p>◦ 소속 대학장 승인 및 복무처리 없이 공무외 국외여행 실시(교원 8명) 【국가공무원법 제58조, 군산대학교 교육공무원 국외여행규정 제20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8조】</p>	<p>◦ 주의(8명) ◦ 개선 - 교원이 ‘공무외 국외여행’을 실시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군산대학교 교육공무원 국외여행규정」 제20조를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등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하기 바람</p>
<p>복무 未처리 공무외 국외여행</p>	<p>◦ 교원 8명이 총 12회에 걸쳐 대학장(총장)의 허가 없이 공무외 국외여행 실시</p>	<p>◦ 주의(8명)</p>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2019. 순천대)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순천대학교 교육공무원 국외여행 업무처리지침 제6조】	
복무 未처리 공무외 국외여행 (2018. 충북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공무원 69명이 소속학과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공무외 국외여행 실시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충북대학교 교육공무원 국외여행업무 처리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의(68명)
파견교사 복무 未처리 공무외 국외여행 (2018. 충북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8명의 파견교사가 소속 학과장의 휴가 승인 없이 공무외 국외여행 실시 【공무원 임용규칙 제3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의(8명)
교직원 복무규정 未준수 (2019. 군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겸직허가 받은 교수 2명은 기관 이사회 등에 복무처리 없이 참석 승진시험에 응시하면서 공가로 처리하지 않고 출장처리하여 출장비 수령(2명, 합계 115,600원) 진단서 첨부없이 병가 6일 초과 사용자 5명, 18일분의 연가보상비 합계 1,561,810원 수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제17조 및 제19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의(9명)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정하게 수령한 출장비 및 연가보상비 합계 1,677,410원을 당사 자료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유연근무제 신청 직원 복무 위반 (2019. 제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연근무를 신청한 후 승인받은 시간보다 짧게는 41분 길게는 4시간 19분까지 조기퇴근하거나(8회, 17시간 39분) 근무시간 내에 근무상황 처리 없이 외출(19회, 33시간 35분)하여 총 27회, 합계 51시간 14분(약 6.2일 해당) 동안 복무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무 未 처리 일수 7일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 합계 758,710원 수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8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8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4장, 제주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징계(1명)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연근무제 신청(승인)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 방안을 마련·시행하기 바람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다 지급된 연가보상비 합계 758,710원을 0으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0직원 병가 등 허가 부적정 (2019. 제주대)</p>	<p>◦ 병가 및 월차에 대해 연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병가 21일, 월차 7일을 더 허가하고 위 초과한 병가 및 월차에 대한 보수합계 1,569,170원을 감액하지 않고 전액 지급</p> <p style="text-align: center;">【제주대학교 대학회계 계약직원 취업규칙 제24조, 제27조 및 제37조】</p>	<p>◦ 경고 (2명) ◦ 시정(회수) - 병가, 월차 허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계약직원으로부터 감하지 아니한 보수합계 1,569,170원을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p>진단서 未첨부 병가 처리 (2019. 공주대)</p>	<p>◦ '15년부터 '17년까지 직원 2명이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고 연간 6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병가 일수를 연가 또는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아 보수 총 1,399,160원 과다 수령</p> <p style="text-align: center;">【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 제5항, 제18조 제3항 및 제24조, 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 제1항】</p>	<p>◦ 주의(2명) ◦ 시정(회수) - 과다 수령한 연가 보상비 및 결근 시 공제되어야 할 봉급 일액합계 1,399,160 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p>항공마일리지 未입력 (2019. 제주대)</p>	<p>◦ 교원 23명이 총 1,678회 공무출장을 수행하면서 항공마일리지 합계 1,242,031마일을 코러스시스템에 未입력</p> <p style="text-align: center;">【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2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p>	<p>◦ 주의(23명) ◦ 통보 - 미입력된 항공마일리지 합계 1,242,031마일은 입력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시스템 입력 등 항공마일리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p>
<p>수당 관련 의견수렴 절차 미흡 (2021. 금오공대)</p>	<p>◦ 임금 등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하는 경우임에도 수당 폐지와 관련한 근로자의 동의 의견수렴 소홀</p> <p style="text-align: center;">【근로기준법 제5조】</p>	<p>◦ 주의(2명)</p>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근무상황 조작·보수(수당) 수령 (2019. 부경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병가를 진단서 병가로 근무상황부 조작 및 既결재처리 된 일반병가를 무단 취소한 후 보수 및 수당 합계 1,670,050원 부당 수령 <p style="text-align: center;">【부경대학교 취업규칙 제4조, 제11조, 제13조, 제21조, 제4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보(문책, 징계, 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대학회계직 ○○○에 대해 부경대학교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문책(징계, 해고)’하기 바람 ◦ 주의(4명)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하게 지급받은 유급 휴가보상비, 보수 및 시간외수당합계1,671,050원을 ○○○으로부터 회수하여 부경대학교 회계에 세입 조치하기 바람
외부강의 등 복무처리 부적정 (2020. 강릉원주대)	<p style="text-align: center;">【외부강의 복무 처리 부적정에 관한 사항】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4명이 복무처리를 하지 않은 채 외부강의 <p style="text-align: center;">【전임교원 타교 출강 복무 처리 부적정】 ----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4명이 복무처리를 하지 않고 타 대학에 출강 <p style="text-align: center;">【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0장】</p>	<p style="text-align: center;">【①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4명) <p style="text-align: center;">【②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4명)
복무 처리 부적정 (2020. 안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4회에 걸쳐 출장수행 중 교내 종합스포츠센터를 이용 <p style="text-align: center;">【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1명)
의학전문대학원 직원	<p style="text-align: center;">【O워크숍에 관한 사항】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7명이 O워크숍 명목으로 출장처리 	<p style="text-align: center;">【①,②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1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복무(출장)처리 부적정 (2019. 제주대)	(여비합계: 2,407,300원 수령)후 실제로는 출장목적과 달리 여행을 다녀옴 【O직원 출장에 관한 사항】 -----② ◦ 직원 2명이 총 4차례에 걸쳐 공무를 사유로 출장신청을 하고도 실제로는 공무수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여비 합계 407,100원을 수령하고 2018년도 복무 未처리 일수 총 4일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 합계 403,310원을 수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및 제6조】	【① 관련】 ◦ 경고(1명) ◦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집행한 워크숍 경비 합계 2,407,300원을 7명으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교직원 복무처리 부적정 (2019. 순천대)	◦ 직원 1명이 3회에 걸쳐 병가를 신청하고 실제로는 신청 사유와 다르게 대학원 수업을 수강했음에도 연가보상비 합계 235,430원 수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제18조 제1항·제20조】	◦ 경고(1명) ◦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수령한 연가보상비 합계 235,430원을 당사자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겸직 未허가 타 대학 출강 등 (2020. 춘천교대)	◦ 교원 10명이 총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지 않거나 복무처리 없이 타 대학에 출강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제9장 및 제10장】	◦ 주의(10명)
겸직 未허가 타교 출강 등 (2019. 제주대)	◦ 교직원 9명이 사전 승인 없이 타교출강 또는 출강승인은 받았으나 복무처리 없이 타교출강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제9장 및 제10장, 제주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16조, 제주대학교 교원 겸직에 관한 지침 제4조】	◦ 경고(6명) ◦ 주의(3명)
未승인 타교 출강 등	◦ 사전 승인 없이 타교출강(2명), 출강승인은 받았으나 복무처리 없이 타교출강(5명)	◦ 경고(2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2019. 군산대)	<p>【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군산대학교 수업관리 규정 제19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5명)
<p>전임교원 未허가 타 대학 출강 및 근무상황 未처리 (2019. 순천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4명이 총장의 사전 검직허가를 받지 않거나 근무상황 처리를 하지 않고 타 대학에 출강 <p>【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8조, 순천대학교 교원 타대학 출강 허가지침 제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4명)
<p>교원 복무규정 未준수 (2018. 충북대)</p>	<p>〈복무 未처리 타교출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 13명이 복무처리 없이 외부 출강 <p>【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p> <p>〈복무 未처리 이사회 등 참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 6명이 총 46회에 걸쳐 연가 등 복무 처리 없이 타기관 이사회 참석 <p>【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18명)
<p>외부강의·회의 등 未신고 (2018. 충북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145명이 총장에게 외부강의 신고 없이 출강 <p>【충북대학교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외부강의 등을 실시하는 경우 사전신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철저히 하기 바람
<p>검직 未허가 연구과제 참여 (2018. 충북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1명이 총장의 사전허가 없이 7개 연구용역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직원은 2개 연구과제에 대하여 공동연구원 참여 검직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사유로 총장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징계(1명) ◦ 경고(2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불허하였음에도 공동연구 강행</p> <p>【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p>	
<p>겸직 未허가 사외이사 재직 등 (2019. 순천대)</p>	<p>◦ 순천대학교 △△과 교수 ○○○이 2016. 4. 23.부터 2018. 5. 4. 감사일 현재까지 총장의 겸직허가 없이 ☆☆조합 사외이사로 재직</p> <p>◦ 2012. 4. 1.부터 2018. 2. 28.까지 교직원 2명이 총장의 사전 겸직허가 없이 13개 연구과제의 연구원으로 참여</p> <p>【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4조 제1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순천대학교 교원 겸직허가 지침 제53조】</p>	<p>◦ 경고(3명)</p>
<p>대학회계직 등 복무 미처리 학위과정 수강 (2021. 금오공대)</p>	<p>◦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018학년도 2학기까지 교직원 4명이 복무처리를 하지 않고 근무시간 중 대학원 석·박사과정 7개 과목 합계 106시간(복무 미처리 7일)의 수업을 수강하고,</p> <p>- 대학원 교과목을 수강하면서 시간외근무를 신청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합계 1,470,850원 수령하거나 위 복무 미처리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 합계 685,280원 수령</p> <p>【금오공과대학교 대학회계직원 인사 규정 제7조, 제9조, 제19조, 제22조】</p>	<p>◦ 경고(1명)</p> <p>◦ 주의(3명)</p> <p>◦ 시정(회수)</p> <p>- 과다 지급된 연가보상비 및 보수 합계 2,156,130원을 당사자 4명에게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p>근무시간 중 학위과정 무단 수강 (2020. 강릉원주대)</p>	<p>◦ 2017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2학기까지 교직원 12명이 복무처리를 하지 않고 근무시간 중 대학원 석·박사과정 74개 교과목 총 2,993시간의 수업을 수강하고,</p> <p>- 위 복무 未처리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 3,817,850원 및 결근처리 시 공제되어야 할 보수 17,636,110원 총 21,453,960원을 초과 수령</p>	<p>◦ 중징계(2명)</p> <p>◦ 경징계(7명)</p> <p>◦ 경고(3명)</p> <p>◦ 시정(회수)</p> <p>- 부당하게 지급 받은 연가보상비 3,817,850원, 결근 처리시 공제해야 할</p>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 align="center">【국가공무원법 제58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p>	<p>보수 17,636,110원, 총 21,453,960원을 관 련 자 들 로 부 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p>
<p>복무 未처리 대학원 강의수강 등 (2020. 안동대)</p>	<p>◦ 2015학년도 1학기부터 2018학년도 2학기까지 교직원 5명이 복무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근무시간 중 대학원 석·박사과정 36개 교과목을 총 479회(합계 1,138시간)에 걸쳐 수업을 수강하고, - 위 복무 未처리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 1,830,290원과 결근처리 시 공제되어야 할 보수 5,609,430원 합계 7,439,720원을 과다 수령</p> <p align="center">【국가공무원 제56조 및 제58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9장, 안동대학교 무기계약직 취업규칙 제5조, 제9조 및 제16조】</p>	<p>◦ 중징계(1명) ◦ 경징계(2명) ◦ 경고(2명) ◦ 시정(회수) - 부당하게 지급 받은 연가보상비 1,830,290원, 결근 처리 시 공제해야 할 보수 5,609,430원 합계 7,439,720원을 관 련 자 들 로 부 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p>
<p>복무 未처리 대학원 강의수강 등 (2019. 제주대)</p>	<p>【복무 未처리 대학원 강의수강】 -----①</p> <p>◦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2학기까지 교직원 6명이 복무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근무시간 중 대학원 석·박사과정 21개 교과목을 총 130회(합계 304시간)에 걸쳐 수업을 수강하고, - 위 복무 未처리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 917,120원과 결근처리 시 공제되어야 할 보수 1,522,500원 합계 2,439,620원을 과다 수령</p> <p align="center">【국가공무원 제58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9장】</p> <p>【초과근무 시간 중 대학원 강의수강】 -----②</p> <p>◦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교직원 3명은 총 10회에 걸쳐 대학원 수업에 참석하고도 시간외</p>	<p align="center">【①,② 관련】</p> <p>◦ 경징계(1명) ◦ 시정(회수) - 부당하게 지급 받은 연가보상비 917,120원, 결근 처리 시 공제해야 할 보수 1,522,500원, 초 과 근 무 수 당 239,570원 을 8명으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p> <p align="center">【①관련】</p> <p>◦ 경징계(1명)</p>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근무를 정상적으로 한 것처럼 하여 초과근무수당 합계 239,570원 초과 수령</p> <p>【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7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7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4명) <li style="text-align: center;">【②관련】 ◦ 경고(2명)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 3명에 대해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조치하기 바람
<p>초과근무수당 수령 부적정 (2019. 한국교통대)</p>	<p>◦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2학기까지 직원 9명이 평생교육 강좌를 수강하고도 29차례에 걸쳐 사실과 다르게 총 61시간을 시간외근무로 신청하여 초과근무수당 합계 567,860원 수령</p> <p style="text-align: center;">【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제18조 제1항·제20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9명)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정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합계 567,860원을 9명으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9명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하기 바람
<p>교직원 근무시간 학위과정 수업참여 및 복무 未처리 (2019. 순천대)</p>	<p>◦ 2015학년도 1학기부터 2018학년도 1학기까지 교직원 17명이 복무처리를 하지 않고 근무시간 중 대학원 석·박사과정 강의 합계 161일(1,292시간) 상당의 수업을 수강하고, - 위 복무未처리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 및 보수 합계 7,822,280원 수령</p> <p style="text-align: center;">【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제18조 제1항·제20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징계(2명) ◦ 경고(14명) ◦ 통보(문책_징계1명)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다 지급된 연가보상비 및 보수 합계 7,822,280원을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등 15명으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근무시간 중 학위과정 무단 수강 등 (2018. 충북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10명이 연가 등 복무처리 없이 근무시간 중에 본교 대학원 석·박사 과정 22개 과목 합계 230일(1,842시간) 수업 수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직원 8명은 未허가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 및 결근 시 공제되어야 할 보수 합계 13,439,920원 수령 <p style="text-align: center;">【국가공무원법 제58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충북대학교 취업규칙 제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징계(5명) ◦ 경고(5명) ◦ 주의(9명)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다 지급된 연가보상비 및 보수 합계 13,439,920원을 ○○○ 등 8명으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 (2018. 충북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4명이 대학원 교과목을 수강하면서 시간외근무를 신청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합계 864,390원 수령 <p style="text-align: center;">【국가공무원법 제56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충북대학교 취업규칙 제2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2명) ◦ 주의(2명)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하게 수령한 시간외근무수당 합계 864,390원을 ○○○ 등 4명으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교직원 4대 폭력 예방교육 지연 및 未이수 (2021. 금오공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교직원 624명이 4대 폭력 예방교육을 未이수, 신규 임용 교직원 149명이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 지연 또는 未이수 <p style="text-align: center;">【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 폭력 예방교육 미이수자들에 대한 교육이수 및 제재방안을 마련시행하기 바람
교직원 4대 폭력 예방교육 未이수 등 (2020. 강릉원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교직원 1,252명이 성매매 예방교육을 未이수 ◦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 신규 임용 교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통보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108명이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 지연 또는 미이수</p> <p>【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p>	<p>- 4대 폭력 예방교육 미이수자들에게 대한 교육이수 방안을 마련·시행하기 바람</p>
<p>교직원 4대 폭력 예방교육 부적정 (2020. 춘천교대)</p>	<p>◦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교직원 223명이 성매매 예방교육을 미이수</p> <p>◦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 신규 임용 교직원 25명이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 지연 또는 미이수</p> <p>【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p>	<p>◦ 기관경고</p> <p>◦ 통보</p> <p>- 4대 폭력 예방교육 미이수자들에게 대한 교육이수 방안을 마련·시행하기 바람</p>
<p>교직원 4대 폭력 예방교육未실시 등 (2019. 한국교통대)</p>	<p>◦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교직원 535명이 성매매 예방교육을 미이수</p> <p>◦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 신규 임용 교직원 63명이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 지연 또는 미이수</p> <p>【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p>	<p>◦ 통보</p> <p>- 4대 폭력 예방교육 미이수자들에게 대한 교육이수 방안을 마련·시행하기 바람</p>
<p>교직원 4대 폭력 예방교육未실시 등 (2019. 제주대)</p>	<p>◦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교직원 1,155명이 성매매 예방교육을 미이수</p> <p>◦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신규 임용 교직원 115명이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 지연 또는 미이수</p> <p>【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p>	<p>◦ 기관경고</p> <p>◦ 통보</p> <p>- 4대 폭력 예방교육 미이수자들에게 대한 교육이수 방안을 마련·시행하기 바람</p>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성희롱·성폭력 관련 제도 운영 등 부적정 (2020. 강릉원주대)	<p>【성희롱·성폭력 관련 자체규정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한 피해자의 근로권 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기관장의 책무, 신고 접수된 사안에 대한 처리 기한 등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운영 <p>【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바목,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p> <p>【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지정에 관한 사항-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원을 여성으로만 지정하여 운영 <p>【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제1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 강릉원주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기본 계획】</p>	<p>【①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경고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을 관련 법령 등에 맞게 개정하기 바람 <p>【②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원 지정 시 관련 규정(법령 등)에 맞게 지정하기 바람
자체행정감사 결과 보고 및 처리 부당 (2020. 강릉원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처분위원회에 안건 상정하여 심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362일이 지난 시점에 총장에게 감사결과를 지연보고 하였으며, “처분양정을 정하기 어려워 곧 실시 예정인 교육부 종합감사 시 판단을 받겠다.”라는 명목으로 감사지적 및 처분 심의가 없었던 것으로 분야별 지적사항에서 제외하고 보고하여 감사처분 대상인 교직원 12명 중 9명이 불이익 처분 없이 퇴직하게 함 <p>【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9조, 제78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 및 제4조, 강릉원주대학교 행정감사 규정 제15조, 제16조, 제2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징계(2명) 경고(1명)
직무상 명령 불복종 등	<p>【직무상 명령 불복종】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년 산학협력단 자체감사 실시 결과에 	<p>【①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보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2019. 한국교통대)	<p>대하여 후속조치하겠다고 보고하였음에도 업무처리를 하지 않아 상급자가 5회에 걸쳐 업무처리를 지시하였음에도 위 후속조치를 未이행</p> <p>【연구비 정기감사 未실시】 -----②</p> <p>◦ 2017년 자체감사 이후 2018년, 2019에는 연구비 정기감사 未실시</p> <p>【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제5조, 한국교통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 제17조】</p>	<p>- 2017년 산학협력단 자체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바람</p> <p>◦ 통보(문책)</p> <p>- O(정규직 6급)을 자체규정에 따라 ‘문책(중징계)’하기 바람</p> <p>【②관련】</p> <p>◦ 기관경고</p>
<p>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未이행</p> <p>(2019. 한국교통대)</p>	<p>◦ 소송에서 승소한 후 원고가 상고를 포기하여 승소가 확정되었음에도 소송비용액 확정 未신청</p> <p>【민사소송법 제110조제1항,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3항】</p>	<p>◦ 주의(6명)</p> <p>◦ 통보</p> <p>- 원고들로부터 소송비용을 반환 받아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예산·회계·연구비】		
<p>정기예금 만기해약 지연 이자손실 발생</p> <p>(2021. 금오공대)</p>	<p>◦ 2017. 5.부터 2021. 1.까지 33개 정기예금을 만료일보다 짧게는 5일에서 길게는 149일까지 지연 해약하여 총 8,932천원 상당의 이자 손실을 발생시킴</p>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2017~2020년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교육부)】</p>	<p>◦ 주의(23명)</p> <p>◦ 통보</p> <p>- 대학회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금 관리 방안을 마련·시행하기 바람</p>
<p>정기예금 관리 부적정(약정기간 미준수)</p> <p>(2020. 춘천교대)</p>	<p>◦ 2017. 3.부터 2019. 7.까지 10개 정기예금을 만료일보다 짧게는 11일에서 길게는 39일까지 지연 해약하여 총 835,904원 상당의 이자 손실을 발생시킴</p>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2017~2020 대학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p>	<p>◦ 기관주의</p> <p>◦ 통보</p> <p>- 대학회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휴자금 관리 방안을 마련·시행하기 바람</p>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정기예금 만기해약 지연 이자손실 발생 (2019. 한국교통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 3.부터 2018. 9.까지 34개 정기예금을 만료일보다 짧게는 10일에서 길게는 59일까지 지연 해약하여 총 8,455천원 상당의 이자 손실을 발생시킴 <p style="text-align: center;">【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2016~2018년 대학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교육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4명)
예산 관리 등 부적정 (2020. 안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층 22개 계좌를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고 휴면계좌로 보유, ◦ O센터 계좌에 월 평균 131,080천원의 유희자금을 과다 보유하고 있음에도 未확인 후 운영자금 추가 배정 ◦ 교내 부속기관이 직접 추진하는 경비(총 772건)합계 704,849천원을 ‘민간경상보조금’ 비목에서 집행 <p style="text-align: center;">【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2018~2020년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교육부), 2017~2020년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주의(2명) ◦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명의 22개 휴면계좌는 해지하여 잔고(합계 711원)는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희자금은 예금 등으로 예치하고, 민간경상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한하여 교부하기 바람
법인카드 포인트 세입 未조치 (2020. 강릉원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발생한 법인카드 포인트 합계 2,795,646점을 현금으로 전환하여 대학회계에 세입조치 하지 않음 <p style="text-align: center;">【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강릉원주대학교 예산집행 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4명) ◦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조치하지 않은 법인카드 포인트 합계 2,795,646점(2,795,646원 상당)을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클린카드 포인트 세입 未이행 (2019. 제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발생한 법인카드 포인트 합계 3,661,310점을 현금으로 전환하여 대학회계에 세입조치 하지 않음 <p style="text-align: center;">【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제주대학교 클린카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6명) ◦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인 카 드 를 집행함에 따라 발생한 포인트 합계 3,661,310 점을 현금으로 전환하여 대학 회 계 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금고 부당 지정 등 (2020. 강릉원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를 거치지 않고 수의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금고 약정 시 OO과 협약한 ‘강릉원주대학교 건물 기부 채납 및 발전기금 지원’ 사항 未이행 <p style="text-align: center;">【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48조, 2018학년도 국립대학 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징계(2명) ◦ 경고(2명)
각종인쇄물 계약 업무 부적정 (2021. 금오공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회계연도부터 2020회계연도까지 각종 인쇄물에 대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동일업체와 인쇄물 수의계약을 체결 <p style="text-align: center;">【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2018~2020년도 금오공과대학교 예산편성 기본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주의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인쇄물에 대해서는 단가계약 등 일반경쟁을 통해 구매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장기 국외연수(연구년) 조기귀국자 체제비 未정산 (2021. 금오공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 국외연수교수로 선정된 교원 2명의 조기귀국에 따른 체제비 초과수령액에 대하여 정산하지 않음 <p style="text-align: center;">【금오공과대학교 교수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제1조의2 및 제6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4명)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제비 초과수령액 합계 \$1,200에 대한 반환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회수 등 적의 조치하기 바람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연구비 집행 부적정 (2020. 강릉원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 12. 22.부터 2019. 12. 31.까지 매 연말마다 외상으로 구입했던 사무용품비 결제와 위 연구 과제비 잔액 집행을 위해 1~3회에 나눠 함께 11,931천원을 연구비카드로 결제 <p>【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강릉원주대학교 연구비관리 지침 제18조 및 제19조,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구매 지침 제2조 및 제4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의(1명)
연구비 법인카드 사용분 未정산 (2019. 한국교통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직원 31명이 2014. 12.부터 2019. 9.까지 총 124건, 합계 19,405,854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하고 카드 결제일로부터 짧게는 38일 길게는 1,740일이 도과하였는데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未청구 <p>【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한국교통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 제11조 및 제1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경고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정산 카드 사용액 합계 19,405,854원에 대하여 정산하기 바람
연구비 집행잔액 처리 부적정 (2019. 순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책임자 연인원 64명이 수행한 연구과제의 집행잔액 68,244,048원 중 47,772,710원을 위 64명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만 간접비로 편입 <p>【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15조 및 제17조 관련 ‘별표2’, 순천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제1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주의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비 집행잔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한 지침을 상위규정 등에 맞도록 개정하기 바람
산학협력단 허위결산 보고 및 예수금 관리 부당 등 (2019. 한국교통대)	<p>【산학협력단 허위결산 보고】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2018회계연도까지 산학협력단 결산업무를 수행하면서 결산 장부상 일치하지 않은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맞추기 위해 합계 1,026,765,780원을 임의로 기재하고 합계 1,726,928,529원을 재무상대표 부속명세서 미지급비용으로 기재하여 결산 보고 <p>【예수금 계좌 관리 부적정】 -----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원 연직원 2,422명 체세공과금 합계 685,413,571원을 예수금 계좌로 입금하고 정산(669,404,258원) 후 감액된 금액 합계 	<p>【①,②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징계(2명) 경고(3명) 통보(문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회계팀장 O(정규직 6급), O(정규직 7급)을 자체규정에 따라 ‘문책(중징계)’하기 바람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55,123,407원을 돌려주지 않고, 추가된 금액 합계 39,114,094원을 未징수</p> <p>【국가공무원법 제56조,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제5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15조, 제35조 및 제36조, 제38조,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관 정관 제14조,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관 운영규정 제11조】</p>	<p>【①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 결산 보고한 미지급비용 금액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기 바람 【②관련】 ◦ 통보(문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정규직 6급), 을 자체규정에 따라 '문책(중징계)'하기 바람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자들로부터 미정산 된 금액 합계 39,114,094 원 을 징수하고 합계 55,123,407 원 을 돌려주는 등 예수금 계좌를 정산하기 바람
<p>회계관직 未지정 부서 임의지출 및 대학회계 未편입 (2019. 군산대)</p>	<p>◦ 회계관직을 받지 않은 124개부서에서 자체계좌 운용 및 잔액 未반납</p>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관직을 지정받지 아니한 부서 등에 자금을 교부하거나 권한 없이 지출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납받지 아니한 학과운영비 명목의 집행잔액 합계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4,286,186 원 을 관 련 학 과 로 부 터 반납받아 대학회계에 편입하기 바람
포상금 집행 부적정 (2021. 금오공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교기념식 감사패 및 공로패 구입 등 총 31건, 합계 106,715천원을 포상금 과목에서 집행 <p style="text-align: center;">【2018~202년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교육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집행 시 「국립대학회계 예산 집행 기본지침」의 ‘세출 예산 성질별 과목 구분과 설정’에 따라 집행하기 바람
포상금 집행 부적정 (2019. 한국교통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회 체육행사 시상금 등 총 26건, 합계 68,220천원을 포상금 과목에서 집행 <p style="text-align: center;">【2018~202년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교육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집행 시 「국립대학회계 예산 집행 기본지침」의 ‘세출 예산 성질별 과목 구분과 설정’에 따라 집행하기 바람
과 운영비 관리 부적정 (2020. 안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13개 부서에 매월 지급기준보다 합계 21,805천원의 과 운영비를 초과 지급 - 3개 부서는 과 운영비 합계 2,144천원을 부서원 명절 선물세트 구입 등의 명목으로 부적정하게 집행 <p style="text-align: center;">【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지침,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 안동대학교 과운영비 지급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경고(3명)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 운영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하기 바람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원 명절 선물 세트 구입 등의 명목으로 집행한 과 운영비 합계 2,144천원은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관 련 자 들 로 부 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부서평가 시상금 인센티브 지급 (2019. 한국교통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교통대학교 0과는 2015년 부서평가 시상금으로 직원 12명에 대해 각 200천원씩 인센티브로 지급 <p style="text-align: center;">【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한국교통대학교 2015년 부서평가 최종결과 및 시상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3명) 통보 -부적정하게 지급된 부서평가 시상금 인센티브 합계 2,400천원을 관련자 1 2 명 으 로 부 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국제 교류사업 운영·관리 부적정 (2019. 군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관직을 지정받지 않은 부서에서 국제교류사업 운영비 등 집행, 운영비 일부를 교직원 개인카드로 집행 <p style="text-align: center;">【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 군산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 규정 제2조, 제4조, 군산대학교 2016학년도 대학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3명) 주의(3명) 통보 - 국제교류와 관련한 사업은 국제교류교육원 설립 목적 및 업무 분장 등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하기 바람
수입금 국고(대학회계) 지연 납입 (2020. 안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고(대학회계)세입처리 짧게는 11일 길게는 510일 지연(114건 합계 347,351,427원) <p style="text-align: center;">【국고금관리법 제12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의(5명)
수입금 국고(대학회계) 지연 납입 (2019. 제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고(대학회계)세입처리를 짧게는 32일 길게는 128일 지연(296건 합계 32,570,000원) <p style="text-align: center;">【국고금관리법 제12조, 제주대학교 시설물 사용료 징수지침 제4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의(10명)
강의실 사용료 수입금 국고(대학회계) 지연 납입 (2019. 군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의실 사용료 수입금의 국고(대학회계)세입처리 지연(183건 합계 21,051천원) <p style="text-align: center;">【국고금관리법 제12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의(23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직원 보수 지급 부적정 (2020. 춘천교대)</p>	<p>【무급휴가 사용자 보수 지급 부적정】 -----① ◦ 무급휴가 사용자 2명에게 봉급일액을 未감액하고 보수 합계 538,340원 과다 지급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 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제2항, 춘천교육대학교 대학회계직원 취업규칙 제29조】</p> <p>【징계 처분자 정근수당 지급 부적정】 -----② ◦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정근수당 437,800원 지급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p>	<p>【①,②관련】</p> <p>◦ 주의(3명)</p> <p>【①관련】</p> <p>◦ 주의(1명) ◦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된 급여 538,340원을 관련자들로 부터 회수하기 바람</p> <p>【②관련】</p> <p>- 부적정하게 지급된 정근수당 437,800을 관련자들로 부터 회수하기 바람</p>
<p>무기계약직 연가보상비 미지급 (2020. 안동대)</p>	<p>◦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무기계약직 총 18명에 대한 연가보상비 합계 8,926,260원 未지급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근로기준법 제3조, 제5조, 제60조, 안동대학교 무기계약직 취업규칙 제14조】</p>	<p>◦ 경고(6명) ◦ 통보 - 무기계약직 연가보상비 미지급액 8,926,260원을 지급하기 바람</p>
<p>교직원 연가일수 산정 및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2019. 한국교통대)</p>	<p>◦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교직원 43명에 대한 연가보상비 합계 3,868,580원 과다지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17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p>	<p>◦ 주의(7명) ◦ 시정(회수) - 과다지급한 연가보상비 합계 3,868,580원을 관련자들로 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p>가족수당수령 부적정</p>	<p>◦ 부양가족 변동 未신고로 가족수당 700천원 과다 수령</p>	<p>◦ 경고(6명) ◦ 시정(회수)</p>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2020. 안동대)	<p align="center">【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7항】</p>	<p>- 부적정하게 수령한 가족수당 합계 7 0 0 천 원 을 관 련 자 로 부 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p>가족수당 등 수령 부적정 (2020. 춘천교대)</p>	<p>◦ 부양가족 변동 未신고로 가족수당 4,420천원, 맞춤형복지비 900천원(900점) 등 합계 5,320천원 과다 수령</p> <p align="center">【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7항,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0장】</p>	<p>◦ 경고(2명) ◦ 주의(1명) ◦ 시정(회수)</p> <p>- 가족수당 합계 4 , 4 2 0 천 원 을 부적정하게 수령한 관 련 자 들 로 부 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p>◦ 통보</p> <p>- 맞춤형복지비 합 계 900 천 원 (900 점) 을 부적정하게 수령한 관련자들에 대하여 향후 맞춤형복지비 배정 시 위 금 액 (점 수) 만 큼 차감하기 바람</p>
<p>가족수당 및 맞춤형복지비 수령 부적정 (2020. 강릉원주대)</p>	<p>◦ 부양가족 변동 未신고로 가족수당 2,820천원 및 505천원 맞춤형복지포인트 과다 수령</p> <p align="center">【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0장】</p>	<p>◦ 경고(6명) ◦ 시정(회수)</p> <p>- 부적정하게 수령한 가족수당 및 맞춤형 복지비 합계 3 , 3 2 5 천 원 을 당 사 자 들 로 부 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가족수당 및 맞춤형복지비 수령 부적정 (2019. 군산대)</p>	<p>◦ 부양가족 변동 未신고로 가족수당 100천원 및 50천원 상당 맞춤형복지포인트 과다 수령</p> <p>【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0장】</p>	<p>◦ 주의(1명)</p> <p>◦ 시정(회수)</p> <p>- 부적정하게 지급된 가족수당 100천원을 당사자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p>◦ 통보</p> <p>- 부적정하게 맞춤형복지포인트를 수령한 당사자에 대해 향후 맞춤형복지포인트 배정시 부적정하게 수령한 맞춤형복지포인트 만큼 차감하기 바람</p>
<p>가족수당 등 수령 부적정 (2019. 순천대)</p>	<p>◦ 2016. 6.부터 2018. 5. 감사일 현재까지 교직원 8명이 부양가족 변동신고를 하지 않고 가족수당 2,180천원, 맞춤형복지비 600천원 등 합계 2,780천원 수령</p> <p>【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제2항·제7항,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0장】</p>	<p>◦ 경고(5명)</p> <p>◦ 주의(3명)</p> <p>◦ 시정(회수)</p> <p>- 부적정하게 수령한 가족수당 합계 2,180천원을 ◆◆◆ 등 8명으로부터 각각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p>◦ 통보</p> <p>- 복지포인트를 부적정하게 수령한 ○○○ 등 7명에 대하여 향후 복지포인트 배정시 부적정하게 수령한 복지포인트 만큼 차감하기 바람</p>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가족수당 부당 수령 (2018. 충북대)</p>	<p>◦ 교수 1명의 배우자가 공무원임에도 가족수당 총 120천원 중복 수령</p> <p style="text-align: center;">【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p>	<p>◦ 주의(1명) ◦ 시정(회수) - 부당 수령한 가족수당 합계 120천원을 조교수 ○○○으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p>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부적정 (2019. 제주대)</p>	<p>◦ 직원 2명이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00로부터 지원받은 학자금 합계 11,272,400원을 연말정산 시 교육비로 공제받아 소득세 합계 1,995,880원을 과소 납부</p> <p style="text-align: center;">【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p>	<p>◦ 경고(2명) ◦ 시정(회수) - 연말정산 시 부적정하게 교육비를 공제받은 2명으로부터 합계 1,995,880원을 회수하고, 소득세 재신고 등 관련 조치를 취하기 바람</p>
<p>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부적정 (2019. 제주대)</p>	<p>◦ 2016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휴가 등으로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감하지 않고 교직원 9명에게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합계 15,478,380원 과다 지급</p> <p style="text-align: center;">【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주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등 지급 지침 제4조】</p>	<p>◦ 주의(19명) ◦ 시정(회수) - 과다 지급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합계 15,478,380원을 ○○○ 등 9명으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p>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지급 부적정 (2019. 군산대)</p>	<p>◦ 실적인정기간을 채우지 못한 교직원 84명에게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합계 59,281,831원 지급</p> <p style="text-align: center;">【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관련 가이드라인(교육부, 2015~2017)】</p>	<p>◦ 주의(5명) ◦ 시정(회수) - 초과 지급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합계 59,281,831원을 ○○○ 등</p>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8 4 명 으 로 부 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변호사 시험 대비 특강비 지급 부적정 (2018. 충북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속기관 직원을 강사요원으로 활용하면서 지급 기준(시간당 5만원, 일 7만원 한도)을 초과하여 교원 20명에게 강사료 합계 28,555천원 지급 <p style="text-align: center;">【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기본지침(교육부)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의(5명)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내부 강사료 지급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바람
계약 대가 지급 지연 (2019. 한국교통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 3.부터 2019. 11.까지 시설·공사·용역·물품 계약 78건에 있어 짧게는 1일, 길게는 31일 지연하여 대가 지급 <p style="text-align: center;">【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주의
소관사무 수당 지급 부적정 (2021. 금오공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 3.부터 2018. 10.까지 자기 소관사무를 수행한 교직원 총 18명에게 출제위원 수당 등 합계 1,220천원을 지급 <p style="text-align: center;">【국립학교 설치령 제15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2017~20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2명) 주의(2명)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적정하게 지급된 수당 합계 1,220천원을 관련자 1 8 명 으 로 부 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소관사무 수당 지급 부적정 (2020. 안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 7.부터 2019. 9.까지 자기 소관사무를 수행한 교직원 총 367명에게 심사위원 수당 등 합계 22,425천원을 지급 <p style="text-align: center;">【2017~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18~2019회계연도 대학회계 예산 집행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의(16명)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적정하게 지급된 수당 합계 22,425천원을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 계 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소관사무 수당 지급 부적정 (2019. 제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 3.부터 2018. 2.까지 자기 소관사무를 수행한 교원 총 2명에게 관리수당 합계 4,800,000원을 지급 <p style="text-align: center;">【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기재부, 2017), 제주대학교 2017학년도 대학회계 예산 집행 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의(4명)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적정하게 지급된 수당 합계 4,800,000원을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경력직공무원 채용 심사위원 수당 지급 부적정 (2019. 제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전형 심사 업무를 담당한 O에게 심사수당 200천원 지급 <p style="text-align: center;">【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19학년도 대학회계 예산 집행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의(2명)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적정하게 지급된 채용시험 심사수당 200천원을 O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자기소관 사무 수당 지급 부적정 (2018. 충북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소관 사무를 수행한 교직원 37명(연인원 73명)에게 수당 합계 12,430천원 지급 <p style="text-align: center;">【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 충북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5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의(28명)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적정하게 지급된 자기소관 사무수당 합계 12,430천원을 OOO 등 수령자 37명으로부터 각각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교수보직경비 지급 부적정 (2021. 금오공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급대상이 아닌 교원 2명에게 교수보직경비 합계 7,150천원 지급 <p style="text-align: center;">【국립학교 설치령 제15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2017~20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의(3명)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한 보직을 수행하는 교수에게 교수보직경비를 지급하기 바람
교수보직경비 지급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급대상이 아닌 교원 1명에게 교수보직경비 합계 8,572천원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의(9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2020. 안동대)	【국립학교 설치령 제15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2017~2018)】	
직책수행경비 부적정 지급 (2020. 강릉원주대)	◦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가 아닌 전공주임 교수 4명에게 직책수행경비를 지급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강릉원주대학교 대학회계 세입·세출 예산 집행지침】	◦ 주의(13명) ◦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된 직책수행경비 합계 27,200천원을 관련 자 들 로 부 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교수보직경비 지급 부적정 (2019. 한국교통대)	◦ 지급대상이 아닌 교원 2명에게 보직수행경비 합계 6,975,860원 지급 【국립학교 설치령 제15조, 2019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2019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	◦ 주의(3명) ◦ 통보 - 향후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한 보직을 수행하는 교수에게 교수 보 직 경 비 를 지급하기 바람
보직수행경비 지급 부적정 (2019. 군산대)	◦ 지급대상이 아닌 교원 16명에게 보직수행경비 합계 124,254,810원 지급 【국립학교 설치령 제15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2015~2017)】	◦ 기관경고 ◦ 통보 - 향후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보 직 수 행 경 비 를 지급하고, 위 영에 위배되는 지침은 개정하기 바람 <별도조치> ◦ 통보(국립대학정책과, 산학협력정책과) - 부적정하게 보 직 수 행 경 비 를 지급한 사례를 통보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보직수행경비 지급 부적정 (2019. 순천대)	<p>◦ 지급 대상이 아닌 교원 20명에게 보직수행경비 합계 147,769,510원 지급</p> <p>【국립학교 설치령 제15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p>	<p>◦ 기관경고</p> <p>◦ 통보</p> <p>- 향후 국립학교설치령에 따라 보직수행경비를 지급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center;"><별도조치> (국립대학정책과)</p> <p>◦ 통보</p> <p>- 지급 대상이 아닌 교원들에게 보직수행경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례를 통보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p>
보직수행경비 지급 부적정 (2018. 충북대)	<p>◦ 국립학교 설치령에 의한 직위가 아닌 자를 보직수행경비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2015년도 교원보직수행경비 지급 지침’을 마련하여 보직수행경비 지급</p> <p>【국립학교 설치령 제15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2015~2018)】</p>	<p>◦ 기관경고</p> <p>◦ 통보</p> <p>- 향후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보직수행경비를 지급하고, 위 영에 위배되는 지침은 개정하기 바람</p>
계약학과 수당 지급 부적정 (2019. 한국교통대)	<p>◦ 겸직허가권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계약학과 겸직조교를 수행하고, 조교 2명에게 규정에 근거없이 계약학과 겸직수당 합계 13,832,400원을 지급</p> <p style="text-align: center;">【국가공무원법 제64조제1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제1항 및 제2항,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p>	<p>◦ 경고(3명)</p>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담임수당 지급 부적정 (2020. 춘천교대)	◦ 2017. 5.부터 2020. 5월까지 총 6명에게 운영위원회 심의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담임수당 합계 총 4,700천원을 지급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국립대학 기성회회계 등 비국고회계 운용관련 유의사항 알림, 춘천교육대학교 O 규정 제7조제6항】	◦ 주의(5명) ◦ 통보 - 담임수당 지급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지급하기 바람
지원사업 저술 결과보고서 未제출 및 未발간 (2018. 충북대)	◦ 교수 8명이 학술도서 저술 지원금을 받고도 제출기한을 도과한 2018. 3. 감사일 현재까지 저술결과보고서 未제출 ◦ 교수 6명이 학술도서 저술 지원금을 받고도 발간기한을 도과한 2018. 3. 감사일 현재까지 未발간 【충북대학교 국립대학 운영경비 세출예산 집행지침(2015~2017),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 경고(6명) ◦ 주의(8명) ◦ 시정 - ○○○ 등 8명으로부터 저술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받기 바람 - ○○○ 등 6명으로 하여금 학술도서 지원사업에 선정된 저술을 발간하게 하거나, 未발간시 학술도서 저술 지원금을 회수하기 바람
학위논문 심사료 지급 부적정 (2021. 금오공대)	◦ 대학원위원회 심의 및 총장 결재 없이 교직원 총 116명에게 2020학년도 전기 대학원별 학위논문 심사료 합계 12,630천원을 지급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4조, 금오공과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53조】	◦ 주의(3명) ◦ 통보 - 향후 학위논문 심사료는 내부규정에 따라 대학원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지급하기 바람
교육훈련 여비 과다 지급	◦ 교육 목적의 출장비로 교육훈련 여비 30천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직원 10명에게 교육훈련 여비 기준과 다르게 합계 260천원을 과다 지급	◦ 기관주의 ◦ 시정(회수)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2021. 금오공대)	<p align="center">【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 제5항,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p>	<p>-과다 지급한 여비 합계 260,000원을 ○○○ 등 관련자10명으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p>교육훈련 여비 과다 지급 (2019. 한국교통대)</p>	<p>◦ 교육 목적의 출장비로 교육훈련 여비 80천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직원 30명에게 교육훈련 여비 기준과 다르게 합계 1,090천원을 과다 지급</p> <p align="center">【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 제5항,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p>	<p>◦ 경고(1명) ◦ 주의(2명) ◦ 시정(회수)</p> <p>-과다 지급한 여비 합계 1,090,000원을 ○○○ 등 30명으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p>관외출장비 신청 부적정 (2020. 안동대)</p>	<p>◦ 자신의 자택에서 숙박했음에도 실제와 다르게 숙박비를 신청하여 숙박비 합계 260,000원 과다 수령</p> <p align="center">【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치침 제9장】</p>	<p>◦ 경고(1명) ◦ 시정(회수)</p> <p>- 부당 수령한 출장비 합계 260천원을 관련자 로부터 회수하여 관 련 회 계 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p>연구과제 여비 중복 신청 및 지급 (2020. 안동대)</p>	<p>◦ 교원 22명이 2015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총 108건의 출장에 대한 여비 합계 4,360,700원을 중복 신청</p> <p align="center">【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공무원 여비 규정 제4조, 제5조, 제8조의2,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4조, 안동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제9조 및 별표1, 안동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제12조】</p>	<p>◦ 기관경고 ◦ 경고(1명) ◦ 주의(21명) ◦ 시정(회수)</p> <p>- 중복 지급된 여비 합계 4,360,700원을 연 구 책 임 자 22명으로부터 각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여비 중복 수령 등 (2019. 군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날짜의 출장 건에 대해 일비·식비 중복 수령, 동일 출장 건에 대해 여비 및 학회활동경비 중복 수령(3명, 184,700원) <p style="text-align: center;">【국가공무원법 제56조, 공무원여비규정 제4조, 제5조 및 제8조의2, 군산대학교 학술활동경비지원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3명)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추가) 지급된 여비 등 합계 184,700원을 ○○○ 등 관련자 3명으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 계 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여비 중복 수령 등 (2018. 충북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8명이 같은 날 2건의 출장에 대한 여비를 각각 신청하거나, 동일 출장에 대한 여비를 중복 신청하여 출장여비 합계 202,680원 과다 수령 ◦ 교직원 13명이 같은 날 2건의 근무지내 출장에 대한 여비를 각각 수령하여 1일 근무지내 출장비 한도액을 초과하여 합계 190천원 과다 수령 <p style="text-align: center;">【공무원 여비 규정 제4조 내지 제5조 및 제28조,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17명)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 지급된 여비 합계 392,680원을 관 련 자 들 로 부 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연구과제 출장 여비 부당 수령 등 (2019. 한국교통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 교수 △△△이 2017. 6.부터 2019. 5.까지 총 44회에 걸쳐 출장을 신청한 뒤, 실제로는 공무수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연구과제 등 6개 과제에서 여비 합계 2,512,900원을 수령하고 2017년부터 2019. 7.까지 총 25회에 걸쳐 복무처리 없이 지연 출근 <p style="text-align: center;">【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제6조·제9조, 한국교통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징계(1명)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 수령한 여비 합계 2,512,900원을 △ △ △ 으 로 부 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p style="text-align: center;"><별도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보(한국연구재단) ◦ 고발
허위 출장 여비 수령 등 (2019. 순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 교수 △△△이 총 103회에 걸쳐 신청한 출장일수 합계 284일 중 270일은 실제 출장지를 방문하거나 공무수행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중 204일(77건)에 대해 거주지 인근에서 사용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징계(1명)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 수령한 여비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주유 영수증, 학교와 거주지 간에 사용한 하이패스 영수증 등을 출장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여비 합계 14,116,100원 수령</p> <p style="text-align: center;">【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제6조·제9조, 순천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7조, 순천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제8조】</p>	<p>합계 14,116,100원을 △ △ △ 으 로 부 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center;"><별도조치></p> <p>(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연구재단)</p> <p>◦ 통보</p> <p style="padding-left: 20px;">- 국가연구개발비를 부당 집행한 사례를 통보하니,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람</p> <p>◦ 고발</p>
<p>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2020. 강릉원주대)</p>	<p>◦ 13개 수입대체경비 기관에서 상하수도요금 등 명목으로 납부한 47,111,830원을 대학회계에 세입으로 편성하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p> <p style="text-align: center;">【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및 제2항】</p>	<p>◦ 경고(4명)</p> <p>◦ 통보</p> <p style="padding-left: 20px;">-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47,111,830원을 관련 규정에 따라 대학회계 세입으로 편성하기 바람</p>
<p>대학회계 세입 관리 부적정 (2020. 춘천교대)</p>	<p>【임시학생증 분실수수료 세입 예산 미계상】 -①</p> <p>◦ 임시학생증 분실수수료 납부 받은 합계 935,000원을 세입 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p> <p>【체육동아리 외부지원금 관리 부적정】 -----②</p> <p>◦ 교수 2명이 3곳으로부터 지원금 합계 8,912,000원을 대학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수령한 후 대회참가비 등 명목으로 지출</p>	<p style="text-align: center;">【①관련】</p> <p>◦ 기관주의</p> <p>◦ 통보</p> <p style="padding-left: 20px;">-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분실수수료 수입액 합계 935,000원을 대학회계로 세입 조치 후 예산으로 편성하기</p>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 align="center">【국가재정법 제17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p>	<p>바람</p> <p align="center">【②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2명)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지원금은 대학회계에 편입한 후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스키실습경비 관리 부적정 (2020. 안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 교과목 수업을 운영하면서 교외실습에 따른 참여학생(190명) 실습경비 30,870,000원을 대학회계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회계직공무원이 아닌 0과 2명의 개인통장(2개)으로 입금받아 지출 처리 <p align="center">【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3조, 고등교육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실습경비는 대학회계 예산에 편입하여 집행하고, 회계직 공무원이 아닌 교직원이 회계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기 바람
타 회계 전입금 대학회계 未편입 및 직접 사용 (2019. 제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개 전입금 합계 13,048,042,715원을 대학회계의 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60개 부서에서 직접 사용 <p align="center">【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 및 제25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1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타 회계 전입금 등 수입은 대학회계의 예산에 편입한 후 사용하기 바람
기부금 관리 부적정 (2020. 안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과가 기부금 합계 71,000천원을 대학발전기금회계로 편입시키거나 전출하지 아니하고 학과에서 직접관리하고 장학금으로 집행 <p align="center">【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제10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재단법인 안동대학교 발전기금 정관 제4조, 안동대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1명)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의 관리 중인 발전기금 71,000천원을 재단법인 안동대학교 발전기금회계로 편입하기 바람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기부금품 모집 및 O소 운영 부적정 (2020. 안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대급부가 있는 연구개발 목적지정 기부금 합계 500백만원을 받아 이 중 50백만원은 재단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50백만원은 O회계로 전출하여 연구개발비로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O소 박사후 연구원 임용 당일 총장에게 임용추천하고 결격사유 未조회 <p>【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안동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 제3조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1명) 기관경고
발전기금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2020. 춘천교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OO의 승인 없이 기부금 총 450,983,203원을 보통재산으로 관리 <p>【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제2항, 재단법인 춘천교육대학교발전기금 정관 제6조제2항】</p>	<p><별도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보(강원도교육청)
발전기금회계 未편입 기금 관리 (2019. 군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산대학교 발전지원재단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해양과학대학에서 발전기금 573백만원, 사회복지학과에서 발전기금 6백만원 임의관리 <p>【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군산대학교 발전지원재단 정관 제1조, 제3조, 제6조 및 제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경고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산대학교 발전지원재단과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는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발전기금관리규정’은 즉시 폐지하고, 해양과학대학에서 임의관리 중인 발전기금 573,479,237원과 사회복지학과에서 임의관리 중인 발전기금 6,050,220원을 재단법인 군산대학교발전지원재단 회계로 편입하기 바람
발전기금 회계 재원 대학회계 未전출 및 직접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단법인 순천대학교 발전지원재단 회계로 기부된 25개 기금 합계 1,439,675천원을 대학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학생지원과 등 2개 부서가 직접 이체받아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경고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발전기금회계 재원을 대학으로 이체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2019. 순천대)	<p>【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재단법인 순천대학교 발전지원재단 정관 제1조 및 제4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3조·제25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21조】</p>	<p>받는 경우 대학회계에 편입한 다음 집행하기 바람</p> <p><별도조치> (국립대학정책과)</p> <p>◦ 통보</p> <p>- 발전기금을 대학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대학 부서에 이체하여 직접 사용하게 하고 있는 사례를 통보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p>
<p>발전기금회계 관리 및 수당 지급 부적정 (2018. 충북대)</p>	<p>【발전기금회계 재원 대학회계 未전출 및 직접사용 관련】 -----①</p> <p>◦ 재단법인 충북대학교발전기금회계로 기부받은 5개 기금 합계 1,227,902천원을 대학회계로 편입하지 않고 30개 기관이 직접 이체받아 사용</p> <p>【자기소관 사무 수당 지급 관련】 -----②</p> <p>◦ 학생과 등 2개 부서는 충북대학교발전기금회계로부터 이체받은 2개 기금에서 자기소관 사무를 수행한 교직원 13명에게 합계 14,200천원 지급</p>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3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충북대학교 발전기금재단 지정기부금 배정 및</p>	<p>< ① 관련 ></p> <p>◦ 기관경고</p> <p>◦ 통보</p> <p>- 향후, 발전기금회계 재원을 대학(소속 부서 및 단과대학 등 포함)으로 이체하는 경우 대학회계로 편입한 다음 집행하기 바람</p> <p><별도조치></p> <p>◦통보(고등교육정책관)</p> <p>- 발전기금 재원을 대학회계로 편입 하지 아니하고 소속부서 및 단과대학 등으로 직접 이체하여 집행하고 있는 사례를 통보하니</p>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집행 세부기준(2015~2017),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지침(2015~2017년, 기획재정부)】</p>	<p>업무에 참고하기 바람</p> <p>< ② 관련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10명)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정하게 지급된 자기소관 사무수당 합계 14,200천원을 ○○○ 등 13명으로부터 회수하여 충북대학교발전기금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p>업무추진비 자체 이·전용 부적정 (2019. 공주대)</p>	<p>◦ '16학년도 및 '17학년도 대학회계 예산을 자체 이·전용(3회)하면서 총 18개 사업의 복리후생비 등 타 비목에서 합계 31,332천원을 '업무추진비(목)'으로 승인하여 이·전용</p> <p>【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2016~2017), 공주대학교 대학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2016~20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8명)
<p>일상감사 未실시 (2020. 강릉원주대)</p>	<p>◦ 17년도부터 20년도까지 1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물품 구매·제조·처분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170차례의 일상감사 未실시</p> <p>◦ 17년도부터 20년도까지 대학회계 예산을 이·전용하면서 총 40건, 합계 2,734,448천원에 대해 일상감사 未실시</p> <p>【강릉원주대학교 행정감사 규정 제4조 제5호 및 제5조, 강릉원주대학교 일상감사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p>일상감사 未실시 (2020. 안동대)</p>	<p>◦ 17년도부터 20년도까지 1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물품 구매·제조·처분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45건의 일상감사 未실시</p> <p>【강릉원주대학교 일상감사지침 제4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p>이·전용건 등 일상감사 未실시</p>	<p>◦ '16학년도부터 '17학년도까지 총 6차례 대학회계 예산을 이·전용하면서 총 33건, 합계 570,053천원에 대해 일상감사 未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2019. 공주대)	<p>◦ '18. 3. 21. '공주대학교수련원 청소 및 관리용역 연장 계약' (계약금액 49,527천원) 체결 시 일상감사 未 실시</p> <p>【공주대학교 일상감사 지침 제4조 제1항, 공주대학교 대학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2016~2018)】</p>	
<p>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2021. 금오공대)</p>	<p>◦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총 8건, 합계 7,143천원을 집행하면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지 않음</p> <p>【2019~2020년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교육부), 2019~2020년 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금오공과대학교)】</p>	<p>◦ 주의(2명)</p> <p>◦ 통보</p> <p>- 부적정하게 집행한 업무추진비 합계 7,143천원을 관련 규정에 맞게 정산하기 바람</p>
<p>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2019. 한국교통대)</p>	<p>◦ 업무추진비 총 6건, 합계 1,170천원을 결제하면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지 않음</p> <p>【2017~2029년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기본지침(교육부), 2017~2019년 대학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한국교통대학교)】</p>	<p>◦ 주의(2명)</p> <p>◦ 통보</p> <p>- 부적정하게 집행한 업무추진비 합계 1,170천원을 관련 규정에 맞게 정산하기 바람</p>
<p>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2019. 순천대)</p>	<p>◦ 2014. 3.부터 2016. 12.까지 연인원 163명에게 학교 소속부서 등에서 주관하는 위원회에 참석했다는 사유로 회의수당 합계 19,900천원 지급</p> <p>【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기본지침(교육부), 순천대학교 대학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p>	<p>◦ 주의(2명)</p>
<p>실습선 유류비 과다 지급 (2019. 제주대)</p>	<p>◦ 총 2건의 실습선 연료유를 구매하면서 OO이 제출한 단가 변경 내역서가 정유사별 최저 고시가격으로 산출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한 금액 그대로 인정하여 합계 760,000원을 과다 지급</p>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및 제34조, 2016년도 제주대학교 실습선 유류 구매계약 특수조건】</p>	<p>◦ 경고(4명)</p> <p>◦ 시정(회수)</p> <p>- 과다 지급된 실습선 유류비 합계 760,000원을 OO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未활용 (2019. 한국교통대)	◦ 2016년부터 2019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지 않아 함께 16,008,810원을 더 주고 주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2016~2019),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2018~2019)】	◦ 경고(15명)
차량유류비 집행 부적정 (2019. 공주대)	◦ '15. 1월부터 '18.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조달청 ‘공공기관유류공동구매서비스’ 이용을 위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지 아니함 ◦ '15. 1월부터 '18. 6월까지 총 1,577 차례에 걸쳐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가 아닌 총 85개 주유소에서 함께 16,602천원을 더 주고 주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2015~2018), 공주대학교 대학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2015~2018)】	◦ 경고(10명)
비행훈련원 관사 일상경상비 대학회계 집행 (2019. 한국교통대)	◦ 6개의 관사의 일상경상비 함께 10,070,830원을 다핵회계에서 지급 【한국교통대학교 관사 관리 규정 제2조 및 별표1】	◦ 주의(13명) ◦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한 비행훈련원 관사 일상경상비 함께 10,070,830원을 사용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복사기 및 프린터 소모품구매 부적정 (2019. 부경대)	◦ 복사기 및 프린터 소모품을 단가계약 금액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여 39,224,359원의 연구비 낭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부경대학교 연구비 관리운영 지침 제6조, 예산운영 효율화 추진을 위한 예산절감 계획(부경대학교)】	◦ 기관주의 ◦ 통보 - 단가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등 단가계약 업체3개로부터 단가계약 금액보다 초과하여 지급된7,250,081원을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바람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과학영재교육원 학생 부담금 未정산 (2019. 순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 ~ 2017회계연도에 징수한 입학전형료 중 미집행액 합계 7,055천원 未정산 <p style="text-align: center;">【「2016년도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사업운영지침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2명)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未정산한 과학영재교육원 학생부담금 중 미집행액 합계 7,055천원을 정산하기 바람
학생 해외봉사단 현지경비 未정산 (2019. 한국교통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학년도 2학기부터 2017학년도 1학기까지 2건의 해외봉사단 현지경비를 임시 지출경비로 지급받고도 정산서 未 제출 <p style="text-align: center;">【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의(1명)
계약체결 부적정 (2020. 안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경쟁대상 총 2건, 합계 84,396천원을 수의 계약 체결하고 총 35건, 합계 603,432천원을 분할하여 수의계약 체결 <p style="text-align: center;">【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9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6명)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2020. 춘천교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경쟁 입찰 대상인 총 3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 <p style="text-align: center;">【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26조제1항제5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4명) 주의(1명)
황룡제 행사 분할 수의계약 (2019. 군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년 황룡제 행사 용역을 분할하여 수의계약 <p style="text-align: center;">【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의(10명)
상품권 수불부 未작성 (2019. 제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7,450,000원의 상품권 구매 및 배부내역 未작성 <p style="text-align: center;">【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2016~2018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의(6명)
물품구매 부당 및 허위서류 작성·행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는 '15. 8.부터 '18. 5.까지 11개 연구과제에서 매형이 대표인 000에서 총 28건, 합계 106,719,100원의 물품을 직접 구입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징계(1명)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거래명세서 및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2019. 공주대)	<p>본인이 검수란에 서명하여 지출증빙서류로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 000는 '16. 9.부터 '18. 5.까지 4개 연구과제에서 총 6건, 합계 15,643,000원의 물품을 납품받지않고도 000과 공모하여 물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지출증빙서류로 제출 위 000는 '17. 10.부터 '18. 5.까지 5개 연구과제에서 총 8건 합계 2,520,000원의 VIPS상품권을 연구비 카드로 구매하고 본인과 참여 연구원들이 회의 후 식사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하여 지출 증빙서류로 제출 <p style="text-align: center;">【국가공무원법 제56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계산증명규칙 제8조, 공주대학교 연구개발비 관리 지침 제37조 및 제41조, 제42조 및 제50조, 제58조 및 별표1】</p>	<p>회의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연구비를 부당집행한 교수 000로부터 합계 18,163천원(15,643천원+2,520천원)을 회수하여 산학협력단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p> <p><별도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발 통보(중소기업청, 한국연구재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과제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집행한 사례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p>물품관리 부적정 (2020. 안동대)</p>	<p>【재물조사 결과 허위작성에 관한 사항】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속 교직원이 출납받은 노트북컴퓨터 등 총 22점의 물품에 대하여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물품이 존재하는 것처럼 재물조사 결과 작성 <p>【물품분실에 관한 사항】 -----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직원 27명이 노트북컴퓨터 등 총 39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42명)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의 실제현황과 물품대장이 일치되도록 물품을 관리하고, 분실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법 등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구입가격 합계 53,998,020원의 물품을 분실하고도 물품운용관에게 未보고</p> <p>【물품관리법 제19조·제26조·제30조·제31조·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p>	<p>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기 바람</p>
<p>물품관리 부적정 (2020. 춘천교대)</p>	<p>【재물조사 점검 소홀에 관한 사항】 -----①</p> <p>◦ 2개 학과에서 총 7점에 대하여 보관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물품이 존재하는 것으로 재물조사 결과를 보고</p> <p>【물품분실에 관한 사항】 -----②</p> <p>◦ 2개 학과가 총 7점의 물품을 분실하고도 물품관리관 등에게 알리거나 변상조치 未이행</p> <p>【물품대여 미기록에 관한 사항】 -----③</p> <p>◦ 총 3점을 대여하면서 물품의 품명, 품목, 수량 및 용도, 출납시기 등을 기록하지 않고 출납</p> <p>【물품 미허가 반출에 관한 사항】 -----④</p> <p>◦ 출납보고 없이 반출하여 사용</p> <p>【물품관리법 제19조·제26조·제30조·제31조·제45조 및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8조 및 제47조】</p>	<p>◦ 경고(2명)</p> <p>◦ 주의(9명)</p> <p>◦ 통보</p> <p>- 물품의 실제현황과 물품대장이 일치되도록 물품을 관리하고, 분실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기 바람</p>
<p>물품관리 부당 (2019. 순천대)</p>	<p>◦ 교수 ○○○이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던 태블릿컴퓨터 1대를 물품관리관의 출납명령 없이 미국에서 유학중인 아들이 사용하도록 반출</p> <p>◦ 교수 2명이 노트북컴퓨터 및 태블릿컴퓨터를 관리소홀로 분실)했음에도 물품운용관에게 未보고</p> <p>【물품관리법 제26조·제30조·제31조·제34조·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제50조,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p>	<p>◦ 경고(3명)</p> <p>◦ 통보</p> <p>- 태블릿 컴퓨터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중인 ○○○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반입조치하고,</p> <p>- 분실된 노트북컴퓨터 등 2종 2점에 대하여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기 바람</p>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시작품 전산시스템 未등록 (2019. 공주대)	◦ 교직원 14명은 '15. 1월부터 '18.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총 24건의 시작품을 구입하고도 산학협력단 전산시스템에 未등록 【공주대학교 연구개발비 관리 지침 제43조】	◦ 주의(14명)
연구비 취득 물품 등 학교 재산 未 귀속 (2020. 강릉원주대)	◦ 교수 5명이 연구비로 취득한 9건의 물품 등을 학교재산으로 未귀속 【강릉원주대학교 연구비관리 지침 제34조제1항 및 별표1】	◦ 주의(3명) ◦ 통보(운영지원과) - 연구비로 취득 후 학교재산으로 귀속하지 않은 물품 등 9건을 학교재산으로 귀속조치 하기 바람
연구비 취득 기자재 등 학교 자산 未등재 (2020. 안동대)	◦ 연구비로 취득한 82건의 기자재 등을 해당 연구책임자로부터 기부채납받고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未등재 【안동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제18조제6항 및 제7항】	◦ 주의(7명) ◦ 통보 - 연구비로 취득한 기자재 등 82건을 학교 자산으로 등재하기 바람
연구비 구입 물품 관리 부적정 (2019. 한국교통대)	◦ 교원 15명이 총 20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비로 구입한 연구기기 등 총 54점, 합계 257,932,020원을 대학에 未귀속 【한국교통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제21조】	◦ 주의(14명) ◦ 통보 - 연구비로 구입한 연구기기 등 합계 54점을 대학 재산으로 귀속하기 바람 ◦ 통보 - 화공생물공학전공에서 연구물품 기부채납 등재신청(화공생물공 학전공-3172, 2018.12.28.)을 하였음에도 이를 아무런 이유없이 반송(재무과-20165,2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018.12.28.)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재무과 업무 담당자에 대해 자체조사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기 바람
연구과제 시작품 기부채납 未이행 (2019. 제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5명이 총 9건의 시작품을 구입하고도 대학이 기부채납 未이행 <p style="text-align: center;">【제주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제28조, 제주대학교 연구 물품 구매·관리 지침 제2조 및 제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4명)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비로 취득한 시작품 등 자산성 물품이 관련규정에 따라 기부채납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3D 프린팅센터 장비 운영규정 未마련 등 (2019. 한국교통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규정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장비사용료 총 784건, 합계 401,319천원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개 업체에서 의뢰한 3D 프린팅 장비 사용료 총 51건, 합계 28,525,220원 未징수 <p style="text-align: center;">【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지침(2016~20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2명)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D 프린팅센터 미납 장비사용료 합계 28,525,220원을 16개 업체로부터 징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D프린팅센터의 자체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장비사용료를 징수하기 바람
국유재산 관리 부적정 (2020. 춘천교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없이 무상 사용하게하고 사용료 합계 7,059,390원 未징수 <p style="text-align: center;">【국유재산법 제7조제1항, 제30조제1항제1호, 제31조 및 제32조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재산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교내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등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국유재산 관리 부적정 (2019. 제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총 5명에게 임의로 사용·수익하게 하였는데도 이를 방치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 소홀 <p>【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훈령 제5조 및 제6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8명)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받은 국유재산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승인없이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국유재산 관리 소홀 (2019. 공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 12월부터 '17. 12월까지 국유재산 실태를 조사하면서 국유재산 건물 5동을 국유재산관리운 용보고서에 누락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 소홀 <p>【국유재산법 제66조,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훈령 제6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5명) <별도조치> ○ 통보(운영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재산 관리 소홀사례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창 업 보 육 센 터 입주업체 임대료 未징수 (2019. 순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 3월부터 2018. 5월 감사일 현재까지 ○○ 등 3개 업체로부터 임대료 합계 5,440,980원 未징수 <p>【국유재산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3명)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임대료 未 징수액 합계 5,440,980원을 관련 업체들로부터 징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공동실험실습관 기기사용료 未징수 (2020. 강릉원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실험실습관 기자재 이용자 13명으로부터 기기사용료 1,133천원(총 13건)을 미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징수 未관리 <p>【강릉원주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규정 제2조, 강릉원주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운영세칙 제5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3명)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 13명으로부터 공 동 실험 실 습 관 기기사용료 합계 1,133천원을 징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 조치하기 바람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공동실험실습관 기기사용료 未수납 (2020. 안동대)</p>	<p>◦ 공동실험실습관 기자재 이용자 1명으로부터 기기사용료 2,970천원 未수납</p> <p>【안동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규정 제10조, 안동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운영세칙 제8조】</p>	<p>◦ 주의(2명)</p> <p>◦ 시정(회수)</p> <p>- 未수납된 기기사용료 합계 2,970천원을 미납자로부터 납부받아 관련회계에 세입 조치하기 바람</p>
<p>공동실험실습관 기자재 사용료 未징수 (2019. 제주대)</p>	<p>◦ 공동실험실습관 기자재 이용자 24명으로부터 기기사용료 4,288천원 未징수</p> <p>【제주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규정 제2조 및 제11조의2, 공동실험실습관 운영세칙 제10조】</p>	<p>◦ 경고(8명)</p> <p>◦ 시정(회수)</p> <p>- 未징수한 기자재 사용료 합계 4,288,080원을 24명으로부터 징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 조치하기 바람</p>
<p>공동실험실습관 실험분석료 未징수 (2019. 군산대)</p>	<p>◦ 공동실험실습관 기자재 사용자 111명으로부터 총 565건의 실험분석료 합계 44,313,800원 未징수</p> <p>【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군산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규정 제13조, 공동실험실습관 운영세칙 제6조】</p>	<p>◦ 경고(4명)</p> <p>◦ 시정(회수)</p> <p>- 공동실험실습관 기자재를 사용한 ○○○ 등 11명으로부터 실험분석료 합계 44,313,800원을 징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p>◦ 통보</p> <p>- 상위 법령 취지에 맞게 공동실험실습관 실험분석료 징수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바람</p>
<p>공동실험실습관 기기사용 수수료 未징수 (2019. 순천대)</p>	<p>◦ 공동실험실습관 기기이용자 50명이 사용한 수수료 합계 57,111,500원 未징수</p> <p>【순천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규정 제6조,</p>	<p>◦ 기관경고</p> <p>◦ 시정(회수)</p> <p>- 체 납 된</p>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순천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운영세칙 제3조 및 제4조】</p>	<p>공동실험실습관 기자재 사용료 합계 57,111,500원을 ○○○ 등 50명으로부터 징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p>연구물품 중앙구매 未실시 (2019. 제주대)</p>	<p>◦ 교직원 13명이 중앙구매부서를 통해 구입해야 할 총 16건 77,346,358천원의 연구물품을 직접 구매</p> <p style="text-align: center;">【제주대학교 연구비 집행지침 별표1, 제주대학교 연구물품 구매·관리지침 제5조】</p>	<p>◦ 경고(13명) ◦ 통보</p> <p>-중앙구매하지 않은 사실을 자체 조사하여 조치하기 바람</p>
<p>시제품 및 시험설비 제작경비 중앙구매 未실시 (2019. 순천대)</p>	<p>◦ 교수 2명이 중앙구매부서를 통해 구입해야 할 총 38건 133,810천원의 시제품, 시험설비 제작경비 등을 직접 구매</p> <p style="text-align: center;">【순천대학교 연구비 중앙 구매에 관한 기준 제4조 및 제6조】</p>	<p>◦ 경고(2명)</p>
<p>부외계좌 운영 부적정 (2019. 공주대)</p>	<p>◦ 교수 000은 '17. 9월부터 '18.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개인계좌를 통해 이월금, 논문심사료 및 게재료 등으로 17,747,461원을 입금받고 학생도우미수당, 논문심사수당 등으로 6,546,450원 지출</p> <p style="text-align: center;">【국립대학의회계설치및재정운영에관한법률제13조】</p>	<p>◦ 경고(1명) ◦ 시정</p> <p>- 개인명의 계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잔액 11,201,011원을 대학 회계로 편입하기바람</p>
<p>총사업비 관리대상 관리 부적정 (2020. 강릉원주대)</p>	<p>◦ 총사업비 낙찰차액을 최종 계약이 체결된 이후 193일이 지난 후 보고하고 최종 준공된 이후 432일이 지난 후 사업완료 보고</p> <p style="text-align: center;">【교육부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18조, 제59조】</p>	<p>◦ 주의(4명) <별도조치></p> <p>◦ 통보(교육시설과)</p> <p>-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p>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업무처리 부당 (2019. 군산대)</p>	<p>◦ 교육부장관과 협의 없이 교육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을 규모를 확장하고 조달청에 발주 - 부족 재원 5억원은 다른 목적사업비에서 충당</p> <p>【국가재정법 제45조, 교육부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3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7조】</p>	<p>◦ 경징계(1명) ◦ 경고(2명)</p> <p><별도조치></p> <p>◦ 통보(교육시설과) - 총사업비 관리 위반사례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p>
<p>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업무처리 부당 (2019. 군산대)</p>	<p>◦ 교육부장관과 협의 없이 교육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을 규모를 확장하고 조달청에 발주 - 부족 재원 5억원은 다른 목적사업비에서 충당</p> <p>【국가재정법 제45조, 교육부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3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7조】</p>	<p>◦ 경징계(1명) ◦ 경고(2명)</p> <p><별도조치></p> <p>◦ 통보(교육시설과) - 총사업비 관리 위반사례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p>
<p>원양승선실습 관련 학생부담경비 임의 수납·지출 부적정 (2019. 군산대)</p>	<p>◦ 원양승선실습 학생 부담경비 33,300천원을 대학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교직원 개인계좌에서 집행</p> <p>◦ 위 과정에서 교직원이 부담해야 할 경비 3,137천원을 학생부담경비에서 집행</p> <p>【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대학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군산대학교 현장실습수업 운영지침】</p>	<p>◦ 기관경고 ◦ 개선</p> <p>- 회계관직을 지정받지 아니한 부서에서 권한 없이 수입 및 지출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p> <p>◦ 시정(회수)</p> <p>- 교직원에게 사용된 학생부담경비 합계 3,137,640원을 ○○○ 등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p>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연구노트 관리 소홀 (2021. 금오공대)</p>	<p>◦ 2016. 5.부터 2021. 2.까지 교원 및 연구원 145명이 수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 616건에 대한 연구노트를 未제출</p> <p>【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연구노트 지침(과기부훈령) 제6조, 금오공과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규정 제6조제3항】</p>	<p>◦ 기관경고</p> <p>◦ 통보</p> <p>- 미제출한 연구노트를 제출 받아 보관·관리하기 바람</p>
<p>연구노트 미작성 (2020. 안동대)</p>	<p>◦ 2016. 3.부터 2019. 1.까지 교원11명이 수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 13건에 대한 연구노트를 未작성</p> <p>【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연구노트 지침(과기부훈령) 제6조, 안동대학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규정 제5조】</p>	<p>◦ 주의(11명)</p>
<p>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책임자 연구마일리지 지급 부당 (2020. 강릉원주대)</p>	<p>◦ 연구지원인력 외에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이 불가능한 것을 인지하고 연구책임자 28명에게 84,892,249원을 연구마일리지로 전환하여 지급</p> <p>【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적용원칙 종합안내,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4조제1항】</p>	<p>◦ 경징계(3명)</p> <p>◦ 경고(5명)</p> <p>◦ 시정(회수)</p> <p>-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책임자에게 마일리지 명목으로 지급한 84,892,249원을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p>◦ 통보</p> <p>-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책임자에게 배정한 마일리지 중 사용하지 않은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감사일 이후 지급된 마일리지 사용액이 있는 경우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연구비 사용 및 복무 처리 등 부당 (2020. 강릉원주대)</p>	<p>【연구비 사용 관련】 -----①</p> <p>◦ 2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적합한 증명서류 없이 총 244건, 합계 5,245,068원의 연구비 사용하였으며 위 과정에서 배우자와 단 둘 또는 연구과제 참여 학생 1~2인을 포함하여 총 12건 합계 532,600원의 회의비를 사용</p> <p>【국가공무원법 제56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 강릉원주대학교 연구비관리 지침 제10조】</p> <p>【복무처리 관련】 -----②</p> <p>◦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총 76회 근무지 이탈</p> <p>【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8조의제1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2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8조 및 제9조】</p>	<p>【①, ②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징계(1명) 【① 관련】 ◦ 기관경고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하게 사용한 연구비 합계 5,245,068원을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별도조치> ◦ 통보(한국연구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비 부당집행사례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 수사의뢰
<p>참석자 허위 기재 회의비 집행 (2020. 춘천교대)</p>	<p>◦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자를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총 22건, 합계 2,575,600원을 회의비로 집행</p> <p>【국가공무원법 제56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춘천교육대학교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제5조·제7조·제1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징계(1명)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 허위 기재 방법으로 부당 집행한 합계 695,600원을 관련자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별도조치> ◦ 통보(한국연구재단)
<p>허위서류 제출 연구비 집행 (2019. 한국교통대)</p>	<p>◦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자를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총 134건, 합계 11,451,500원을 회의비로 집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징계(1명)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록 허위작성 등 방법으로 부당 집행한 합계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한국교통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 제30조】</p>	<p>11,451,500원을 00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p><별도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보(중소벤처기업부, 한국연구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고발
<p>연구비 집행 관리 부적정 (2019. 한국교통대)</p>	<p>【내부직원 간 회의비 집행】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5회에 걸쳐 연인원 20명이 내부직원 간 회의 후 회의비로 결제한 금액 합계 402,200원을 그대로 집행 <p>【주말사용 입증자료 未첨부 회의비 집행】 ---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 6.부터 2017. 5.까지 총 9개 과제에서 교원 8명이 주말에 사용한 회의비 합계 3,024,162원을 주말사용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집행 <p>【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한국교통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 지침 제30조】</p>	<p>【①,②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3명) 【①관련】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직원 간 집행한 회의비 합계 402,200원을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②관련】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말사용 입증자료 없이 집행한 회의비 합계 3,024,162원에 대해 입증자료 등을 확인하여 정산하기 바람
<p>사적사용 등 연구비 부당 집행 (2019. 제주대)</p>	<p>【연구비 사적사용】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 1.부터 2019. 9.까지 연구과제 등 14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연구비 총 180건, 합계 39,616,288원 사용 <p>【未개최 회의비 집행】 -----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 1.부터 2019. 9.까지 총 11개 과제에서 	<p>【①,②,③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주의 중징계(1명)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 합계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외부인 등과 함께 회의록을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제출하여 총 60건, 합계 11,616,730원을 회의비로 집행</p> <p>【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제주대학교 연구비 집행지침 제8조】</p> <p>【허위 출장 관련】 -----③</p> <p>◦ 2016. 1.부터 2019. 9.까지 총 62회에 걸쳐 출장을 신청한 뒤, 실제로는 출장지를 방문하거나 공무수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연구과제 13개 과제에서 여비 합계 9,633,590원 수령</p> <p>【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6조 및 제9조, 제주대학교 연구비 집행지침 제8조】</p>	<p>60,866천원(39,616천원 + 11,617천원 + 9,633천원)을 회수하여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p>내부공무원과의 연구용역 계약 체결 등 (2019. 군산대)</p>	<p>◦ 교수평의회가 내부공무원과 연구용역계약 체결(7건, 연구용역비 21백만원 지급)</p> <p>【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기본지침(교육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p>	<p>◦ 기관경고</p> <p>◦ 통보</p> <p>- 내부공무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p>
<p>연구책임자 가족 未연신고 연구과제 참여 (2019. 한국교통대)</p>	<p>◦ 교원1명이 신고하지 않고 배우자를 연구원으로 참여시키고 인건비 합계 46,565,800원을 지급</p> <p>【한국교통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5조, 한국교통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 제7조】</p>	<p>◦ 경고(1명)</p>
<p>연구책임자 가족 연구과제 참여 부적정 (2019. 제주대)</p>	<p>◦ 교원4명이 총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배우자 등 가족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키고 인건비 합계 12,097천원 지급(5명, 11개 연구과제)</p> <p>【제주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2조 및 제5조】</p>	<p>◦ 경고(3명)</p> <p>◦ 주의(1명)</p>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연구책임자 가족 연구과제 참여 부적정 (2019. 부경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근 상급자와 상담 없이 가족의 연구보조원 참여(6명, 14개 연구과제) <p>【부경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5조, 부경대학교 배우자·직계가족 등의 연구참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4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6명)
연구용역비 집행 부적정 (2019. 순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 공무원 64명이 연구용역을 수행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연구용역비 합계 142,563천원 지급 <p>【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기본지침(교육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경고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 공무원에게 연구용역비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교내 연구과제 참여제한자 연구비 지원 (2019. 부경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징계처분 등으로 교내 연구과제 참여 제한을 받은 교원 2명이 신청한 3개 연구과제를 교내 연구과제로 선정하고 연구비 지급(40,000천원) <p>【부경대학교 연구관리 규정 제20조, 부경대학교 자율창의학술연구비 지원계획(2015~20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5명) 주의(5명)
우수논문포상금 지급 부적정 (2019. 부경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내 자율창의학습 연구지원에 의해 발표된 논문은 우수논문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자체규정을 위반하여, 교원 5명이 교내 자율창의학술연구 지원 발표 논문에 대해 우수논문 포상금 지급(3,000천원) <p>【부경대학교 우수논문 및 단행본 포상금 지급 지침 제7조, 부경대학교 우수논문 및 단행본 포상금 지급계획(2015~2018, 학술진흥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의(9명)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적정하게 수령한 우수논문포상금 합계 3,000천원을 000 등 관련자 5명으로부터 각각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교내연구비 부당 수령 (2021. 금오공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 2명이 총 2건, 합계 14,000천원의 교내연구비 지원과제에 대하여 지도제자 석사학위 논문을 출처 표시 없이 단순 요약하여 교외 학술지에 게재하고 교내연구비 연구실적물로 제출 <p>【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연구윤리 확보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징계(2명)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당 수령한 연구비 14,000천원을 당사자로부터 회수하여 관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위한 지침 제5조 및 제12조, 금오공과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 규정 제10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p>	<p>련 회계에 세입조치하 기 바람</p>
<p>학술연구조성비 부당 수령 및 연구결과보고서 등 지연 제출 (2020. 강릉원주대)</p>	<p>【학술연구조성비 부당 수령 관련】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1명이 교내연구비 지원과제에 대하여 지도제자 석사학위 논문을 출처 표시 없이 단순 요약하여 교외 학술지에 게재하고 교내연구비 연구실적물로 제출 <p>【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5조 및 제12조, 강릉원주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관리지침 제8조, 제9조】</p> <p>【연구결과보고서 등 지연제출 관련】 -----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8명이 교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기한보다 짧게는 11일부터 길게는 436일까지 지연 제출 ◦ 교원 2명이 연구기간 종료 후 3년이 경과한 감사일 현재까지 연구결과물 未제출 및 연구비 未반납 <p>【강릉원주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관리지침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2항】</p>	<p>【①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징계(1명) ◦ 주의(2명)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 수령한 연구비 4,000천원을 당사자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p>【②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1명) ◦ 주의(7명)
<p>교내연구비 부당 수령 (2019. 한국교통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3명이 총 3건, 합계 25,440천원의 교내연구비 지원과제에 대하여 지도제자 석사학위 논문을 출처 표시 없이 단순 요약하여 교내 학술지에 게재하고 연구실적물로 제출 <p>【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5조 및 제12조, 한국교통대학교 교내 학술연구과제 관리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징계(3명)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 수령한 연구비 25,440천원을 당사자 3명으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p>연구비 부당 수령 (2019. 제주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1명이 지도제자 석사학위 논문을 출처 표시 없이 단순 요약하여 OO에 게재하고 교내성과지원사업 연구성과물로 제출하여 연구비 2,500천원을 지원받음 <p>【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징계(1명)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부교수로부터 2,500천원을 회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 style="text-align: center;">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5조, 제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4조】</p>	<p>수하여 세입조치 하기 바람</p>
<p>교육공무원 해외파견연구보조금 부당 수령 등 (2020. 안동대)</p>	<p>◦ 연구기간 종료 후 연구계획을 변경하고 출처 표시 없이 제자 박사학위논문을 또 다른 제자에게 요약케하여 학회지의 제1저자로 등록하게 한 후 연구계획을 재변경하여 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을 해외파견연구보조금 연구결과로 제출</p> <p style="text-align: center;">【국가공무원법 제56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5조 및 제12조, 안동대학교 교육공무원 해외파견에 관한 지침 제9조】</p>	<p>◦ 중징계(1명) ◦ 경고(1명) ◦ 시정(회수) - 부당 수령한 해외 파견연구보조금 합계 10,000천원을 관련자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p>교내연구비 부당 수령 (2019. 군산대)</p>	<p>◦ 출처 및 인용표시 없이 제자 박사학위논문을 요약하여 학회지 게재 및 교내 학술공모과제 연구결과물로 제출</p> <p style="text-align: center;">【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및 군산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6조, 군산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규정 제12조, 군산대학교 교내 연구과제 관리지침 제10조】</p>	<p>◦ 경징계(1명) ◦ 시정(회수) - 부당 수령한 연구비 5,000천원을 당사자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p>연구결과물 공동저자 부당 등재 (2021. 금오공대)</p>	<p>◦ 교원 2명이 4개의 교내연구비 지원 연구결과물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연구비 집행서류에는 참여연구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던 배우자를 연구결과물의 공동저자로 등재시켜 배우자와 업적평가 실적을 공유</p> <p style="text-align: center;">【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제5조 및 제12조】</p>	<p>◦ 경징계(2명) ◦ 통보 - 참여연구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던 배우자를 연구결과물의 공동저자로 등재한 2명의 논문 4편에 대해 논문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동저자 삭제 등 조치를 하기 바람</p>
<p>석사학위논문 유사 연구결과물 게재 후 교내 연구비 수령</p>	<p>◦ 순천대학교 교수가 자신이 지도한 학생의 석사학위논문과 과제명,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이 유사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뒤, 위 석사학위논문 연구결과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논문에 출처표시</p>	<p>◦ 통보 - 순천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p>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2019. 순천대)	<p>없이 석사학위논문에 관여하지 아니한 교수를 공동저자로 하여 학회지에 게재하고 교내 연구비 수령</p> <p>【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제5조 및 제12조】</p>	<p>등에 따라 해당 논문에 대한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자체조사하여 적의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기 바람</p>
<p>교내 연구과제 결과보고서 지연 제출</p> <p>(2021. 금오공대)</p>	<p>◦ 교원 10명이 교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기한보다 짧게는 21일부터 길게는 620일까지 지연 제출</p> <p>【금오공과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 규정 제5조, 제7조 및 제 11조】</p>	<p>◦ 주의(10명)</p>
<p>교내연구과제 연구결과물 지연 제출</p> <p>(2020. 안동대)</p>	<p>◦ 교원 6명이 교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연구결과물을 제출기한보다 짧게는 47일부터 길게는 478일까지 지연 제출</p> <p>【안동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제29조제1항, 제8항, 별표2】</p>	<p>◦ 주의(7명)</p>
<p>연구년 및 장기국외파견 교수 연구결과물 미제출 및 지연 제출</p> <p>(2020. 강릉원주대)</p>	<p>【연구년 교수 연구결과물 미제출 및 지연 제출】 -①</p> <p>◦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구년 교원으로 선정된 교원 7명이 연구년 종료 후 연구결과물을 미제출하거나 지연 제출</p> <p>【강릉원주대학교 전임교원 연구년 지원 지침 제6조,제11조】</p> <p>【장기국외파견 교수 연구결과물 미제출 및 지연 제출】 -②</p> <p>◦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국외파견 교수로 선정된 교수 5명이 연구실적물을 미제출하거나 지연 제출</p> <p>【강릉원주대학교 장기해외파견 연구지원 지침 제8조, 제12조 및 제16조】</p>	<p>【① 관련】</p> <p>◦ 경고(3명)</p> <p>◦ 주의(4명)</p> <p>◦ 통보</p> <p>- 연구실적물 미제출자에 대한 연구비 반환 규정을 마련하기 바람</p> <p>【② 관련】</p> <p>◦ 경고(2명)</p> <p>◦ 주의(3명)</p> <p>◦ 시정(회수)</p> <p>-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교수로부터 연구비 합계 18,000천원을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교내연구비 연구결과 실적물未제출 및 지연제출 (2019. 한국교통대)</p>	<p>◦ 교수 5명은 총 5건, 합계 39,804천원의 교내연구비를 지원받고도 연구결과 실적물未제출</p> <p>◦ 2016. 6.부터 2018. 6.까지 교수 3명은 총 3건의 교내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짧게는 153일부터 길게는 336일까지 지연 제출</p> <p>【한국교통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 제7조, 한국교통대학교 교내 학술연구과제 관리지침】</p>	<p>◦ 경고(5명)</p> <p>◦ 주의(3명)</p> <p>◦ 시정(회수)</p> <p>-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5명으로부터 교내연구비 합계 39,804천원을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p>연구결과물未제출 등 (2019. 제주대)</p>	<p>【연구결과물未제출】-----①</p> <p>◦ 2014년도 교원성과지원사업 중 신진교수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비 10,000천원을 지원받고도 연구결과물을 2019. 9. 감사일 현재까지未제출</p> <p>【연구비 지원 부적정】-----②</p> <p>◦ 2014년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2015년에 연구과제를 학술연구지원사업으로 선정 한 후 학술연구지원비 2,000천원을 지원</p> <p>【제주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제2조, 교원성과지침사업 지침】</p>	<p>【① 관련】</p> <p>◦ 경고(1명)</p> <p>【② 관련】</p> <p>◦ 주의(4명)</p> <p>◦ 시정(회수)</p> <p>- 연구비를 부적정하게 지원받은 00으로부터 합계 12,000천원(① 관련 10,000천원, ② 관련 2,000천원)을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p>국외파견 교수 연구결과물未제출 등 (2019. 군산대)</p>	<p>◦ 국외파견교수 등 4명은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101일에서 205일 도과하여 제출</p> <p>【군산대학교 교육공무원 국외여행규정 제16조, 군산대학교 연구교수 규정 제6조】</p>	<p>◦ 경고(2명)</p> <p>◦ 주의(2명)</p>
<p>연구교수 의무복무 관리 부적정 (2019. 한국교통대)</p>	<p>◦ 연구년 의무복무기간 이전에 명예퇴직 처리</p> <p>【한국교통대학교 연수교수 규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제1호, 제5조, 제6조】</p> <p>◦ 해외파견 연구년 의무복무기간 이전에 의원면직 처리</p>	<p>◦ 경고(4명)</p> <p>◦ 개선</p> <p>- 해외파견 연구년을 다녀온 후 의무복무기간을 준수하지 않는</p>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 align="center">【한국교통대학교 연수교수 규정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제2호, 제5조, 제6조 및 제9조제2항】</p>	<p>교원에 대해 연구비를 회수하는 등 ‘연구교수’ 규정을 개정하기 바람</p>
<p>연구년 교원 연구결과물 미제출 및 지연 제출 (2021. 금오공대)</p>	<p>◦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구년 교원으로 선정된 교원 8명이 연구년 종료 후 연구결과물을 未제출하거나 지연 제출</p> <p align="center">【금오공과대학교 교수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1조 및 제14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4명) ◦ 주의(4명)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교수로부터 연구비(경비) 합계 12,000천원을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p>연구년연구결과물 미제출 및 지연제출 (2020. 안동대)</p>	<p>◦ 2014. 12.부터 2020. 3.까지 연구교수 및 파견연구보조금을 지원받은 교원 5명이 연구과제 결과를 未제출하거나 지연 제출</p> <p align="center">【안동대학교 연구교수 규정 제7조 및 제11조, 안동대학교 교육공무원 해외파견에 관한 지침 제9조 및 제11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1명) ◦ 주의(4명)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비를 지원받고도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연구교수로부터 연구비 5,000천원을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p>연구교수 결과물(학술지 논문) 지연 제출 (2019. 제주대)</p>	<p>◦ 2016. 3.부터 2019. 9.까지 교원 3명이 장기 국외연수 연구교수 과제 결과물을 최소 58일부터 최대 136일까지 지연 제출</p> <p align="center">【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 관리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3명)
<p>교내 학술연구비 연구결과물 제출 등 부당 (2021. 금오공대)</p>	<p>◦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구비를 지급받은 교원 8명이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기간 시작일 전 이미 학술지에 게재 접수하거나 게재 확정된 논문을 연구결과물로 제출</p> <p align="center">【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 63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5조, 금오공과대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징계(8명) ◦ 경고(3명) ◦ 주의(6명)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시작 전 이미 학술지 게재 접수·확정된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학술연구비 지원 규정 제1조, 제5조, 제8조, 제13조 및 제14조】</p>	<p>논문을 연구결과물로 제출한 교수 8명으로부터 연구비 합계 57,000천원을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p>허위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등 (2019. 순천대)</p>	<p>◦ 교수 ◇◇◇이 다른 사람이 기 발표한 연구논문의 제목을 임의로 변경한 후 연구자 명단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한 허위 연구결과물을 작성 및 제출</p> <p>◦ 또한, 장기해외 파견교수로 선정되어 연구비를 지원받고 허위 연구결과물을 작성하여 이사장 및 총장에게 결과보고서 제출</p> <p>【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 순천대학교 교육공무원 국외여행 업무처리 지침 제2조 제1항 및 제7조 제2항,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p>	<p>◦ 중징계(1명)</p> <p>◦ 시정(회수)</p> <p>- ◇◇◇에게 지원한 연구비 15,000천원을 회수하여 순천대학교 ○○대학 학술재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p><별도조치></p> <p>◦ 고발</p>
<p>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비 부당 수령 (2018. 충북대)</p>	<p>◦ 교수 ○○○은 교내 연구비 5,995,700원을 지원 받고 기 발표된 지도학생의 석사 학위논문을 출처표시없이 단순 요약하여 학술지에 단독 명의로 게재하고 교내 연구과제 실적물로 제출</p> <p>【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 충북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3조, 충북대 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 제33조】</p>	<p>◦ 중징계(1명)</p> <p>◦ 시정(회수)</p> <p>- 부당 지급된 연구비 5,995,700원을 ○○○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p>연구비 사적 사용 및 관련 증빙서류 위조 등 (2018. 충북대)</p>	<p>【부교수 ○○○에 관한 사항】 -----①</p> <p>◦ 부교수 ○○○은 실제 과제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회의와 무관하게 식사비용 등으로 318건 합계 16,843,008원을 대해 연구비 법인카드로 집행하고, 연구보조원 3명의 서명이미지 파일을 도용하여 서명란에 붙이는 방식으로 출장신청서 및 회의록을 위조, 산학협력단에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행사</p>	<p><①번 관련></p> <p>◦ 기관 주의</p> <p>-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p> <p>◦ 중징계(1명)</p> <p>◦ 시정(회수)</p> <p>-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출장신청서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뒤 연</p>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교수 ○○○에 관한 사항】 -----②</p> <p>◦ 교수 ○○○은 실제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지인들과의 식사비용 등으로 7건, 합계 1,238,800원을 연구비 법인카드로 집행하고, 연구보조원 14명(연인원 43명)의 출장신청서 및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p> <p>【국가공무원법 제56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계산증명규칙 제8조, 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제9조 및 제11조, 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 제33조, 제43조, 별표1】</p>	<p>구과제 증빙서류로 제출한 ○○○으로부터 합계 16,843,008원을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p><별도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발 ◦ 통보 <p>(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p> <p>- 연구과제 증빙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집행한 사례를 통보하니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람</p> <p><②번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징계(1명) ◦ 시정(회수) <p>-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출장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뒤 연구과제 증빙서류로 제출한 ○○○으로부터 합계 1,238,800원을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별도조치></p> <p>◦ 통보</p> <p>(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p> <p>- 연구과제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집행한 사례를 통보하니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바람</p>
<p>산업자문 임의수행 (2019. 부경대)</p>	<p>◦ 산학협력단에 알리지 않고 교수 본인 명의로 산업자문계약 체결(2건, 40,000천원)</p> <p>【국가공무원법 제64조, 부경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제22조의3, 부경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 지침 제4조, 제5조】</p>	<p>◦ 경고(1명)</p> <p>◦ 시정(회수)</p> <p>- 산학협력단에 분배 되어야할 산업자문 실시료 8,000천원을 교수 000으로부터 납부받아 산학협력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바람</p>
<p>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미심의 (2020. 안동대)</p>	<p>◦ 발명자 46명에게 총 120건의 지식재산권 처분 등의 계약 체결 및 관련 수입금을 분배하면서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심의 未실시</p> <p>【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 안동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제4조 및 제6조】</p>	<p>◦ 기관경고</p> <p>◦ 통보</p> <p>- 기술이전 계약체결 및 수입금 분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처리하기 바람</p>
<p>지식재산권 계약 부적정 (2019. 군산대)</p>	<p>◦ 산학협력단과 협의 및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임의로 출판계약 체결</p> <p>【군산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제3조, 제5조 및 제21조】</p>	<p>◦ 주의(3명)</p>
<p>LINC+ 육성사업비 지원 교재 개인출판</p>	<p>◦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비에서 교과목 교재개발비 원고료 4,107천원을 지급받고도 교재개발 내용을 임의로 개인출판</p>	<p>◦ 주의(1명)</p> <p>◦ 통보</p>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2020. 안동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35조, 안동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제2조, 제8조, 제9조】	- 개인 명의로 출판된 저서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권리확보 등 조치를 취하기 바람
직무발명 미신고 (2021. 금오공대)	◦ 교수 1명이 자신의 직무발명을 신고하지 않고 개인명의로 특허 등록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2조, 금오공과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제2조, 제11조】	◦ 주의(1명) ◦ 시정 - 개인 명의로 등록된 직무발명에 대해 규정에 따라 권리확보 등 조치를 취하기 바람
직무발명 미신고 (2020. 안동대)	◦ 교수 3명이 자신의 직무발명을 신고하지 않고 개인명의로 특허 등록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2조, 안동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제2조, 제9조】	◦ 주의(3명) ◦ 시정 - 개인 명의로 등록된 4건의 직무발명에 대해 규정에 따라 권리확보 등 조치를 취하기 바람
직무발명 미신고 등 (2020. 강릉원주대)	◦ 교수 1명이 자신의 직무발명을 신고하지 않고 개인명의로 특허 등록 【발명진흥법 제10조, 강릉원주대학교 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제5조】	◦ 주의(1명) ◦ 시정 - 개인 명의로 등록된 직무발명에 대해 규정에 따라 권리확보 등 조치를 취하기 바람
직무발명 미신고 등 (2019. 한국교통대)	◦ 교수 3명이 자신의 직무발명을 신고하지 않고 개인명의로 특허 등록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2조, 한국교통대학교 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정 제3조, 제9조, 제10조】	◦ 주의(3명) ◦ 시정 - 개인 명의로 등록된 4건의 직무발명에 대해 규정에 따라 권리확보 등 조치를 취하기 바람
개인명의 특허 출원·등록 부적정 (2018. 충북대)	◦ 교수 2명이 자신의 직무발명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명의로 특허 출원·등록	◦ 주의(2명) ◦ 시정 - 개인 명의로 등록된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2조, 충북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제2조, 제4조 및 제5조】</p>	<p>2건의 직무발명 특허에 대해 규정에 따라 권리확보 등 조치를 취하기 바람</p>
<p>대학 특성화사업 정책연구보고서 작성수당 집행 부적정 (2019. 한국교통대)</p>	<p>◦ 보고서작성에 참여한 내부구성원 5명에게 각 1,000천원씩 합계 5,000천원을 정책연구보고서 작성수당으로 지급</p> <p>【대학 특성화사업 운영 매뉴얼(한국연구재단)】</p>	<p>◦ 주의(4명) ◦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된 대학 특성화사업 정책연구보고서 작성수당 합계 5,000천원을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 조치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center;"><별도조치></p> <p>◦ 통보(한국연구재단)</p>
<p>대학 특성화사업(CK) 예산 집행 부적정 (2018. 충북대)</p>	<p>◦ 대학 특성화사업(CK) 교육환경개선비에서 교육환경개선과 무관한 물품구입비 합계 30,368,690원(총 57건) 집행</p> <p>【대학 특성화사업(CK) 관리운영규정 제33조, 2015 대학 특성화사업 운영 매뉴얼 사업비 집행 가이드 라인】</p>	<p>◦ 경고(2명) ◦ 통보 - 관련규정에 따라 예산집행 기준을 준수하여 집행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center;"><별도조치></p> <p>◦ 통보(대학재정장학과) - 교육환경개선비 부적정 집행 사례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p>
<p>여비 중복 수령 (2018. 충북대)</p>	<p>◦ 교직원 14명이 총 30건의 출장에 대한 여비를 중복 신청하여 합계 1,340,950원 중복 수령</p> <p>【국가공무원법 제56조, 공무원 여비규정 제4조 및 제5조】</p>	<p>◦ 기관경고 ◦ 시정(회수) - 중복 지급된 여비 합계 1,340,950원을 ○○○ 등 관련자 14명으로부터 각각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 조치하기 바람</p>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연구비간접비 집행(과태료 납부) 부적정 (2019. 군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명의 未변경에 따른 과태료 1,600천원을 연구비 간접비에서 납부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군산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규정 제1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2명)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비 간접비에서 부적정하게 납부한 과태료 1,600천원의 보전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연구비 소모품 구매 부적정 (2021. 금오공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구매를 요청해야 할 만큼 충분한 소모품 구매계획이 있음에도 평균 24일 간격으로 연구소모품을 특정업체를 통해 직접 구매 <p style="text-align: center;">【금오공과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제24조제2항 및 제26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1명)
연구비 중앙관리 未이행 (2019. 군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학협력단 정관 등과 달리 「군산대학교 연구개발능률 성과급 지급 지침」을 임의로 정하고, 연구과제 간접비 93백만원을 5개 연구소에 지급하여 운영비로 사용 부설 연구소 명의로 연구용역 계약 직접 체결 및 연구비 직접 수령·집행 <p style="text-align: center;">【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19조, 군산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규정 제4조, 군산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지침 제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경고 경고(1명) 주의(2명)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시설 자체계좌를 해지하고 잔액은 산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군산대학교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지침」을 폐지하는 등 연구비는 산학협력단 정관, 군산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규정 및 지침에 따라 중앙관리하기 바람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산정 및 지급 부적정 (2019. 제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년부터 2019. 1.까지 연인원 967명에게 과제별 간접비 수입액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산정하여 합계 1,043,644천원을 지급 <p style="text-align: center;">【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적용원칙 종합안내(국가과학기술위원회, '1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 경고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기 바람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연구개발능률성과급 산정(배분) 및 집행 부적정 (2019. 한국교통대)</p>	<p>◦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성과평가 없이 자체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구책임자에게 총 459과제, 합계 1,438,250천원을 ‘연구책임자 연구활동 촉진을 위한 경비’로 배분</p> <p>◦ 2015년부터 2019. 8.까지 연인원 459명에게 과제별 간접비 수입액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 합계 474,406,000원을 지급</p> <p>◦ 상위 규정과 다르게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합계 1,396,360,300원을 초과 배분·지급</p> <p>【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적용원칙 종합안내(국가과학기술위원회, '12.9)】</p>	<p>◦ 기관 경고</p> <p>◦ 시정(회수)</p> <p>- 초과 배분 및 집행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891,617,217원을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하여 산학협력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p>◦ 개선</p> <p>-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관련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기 바람</p>
<p>국가연구개발과제 성과급 지급 부적정 (2019. 순천대)</p>	<p>【성과급 산정 및 초과 지급 관련】 -----①</p> <p>◦ 산학협력단에 간접비가 납부된 국가연구개발과제 총 301건을 대상으로 각 과제별 간접비 계상비율에 따라 연구책임자 개인별 성과급을 미리 산정하고 교원 연인원 301명에게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액으로 재산정하여 지급</p> <p>- 그에 따라, 간접비가 납부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성과급으로 지급 상한액 초과 지급</p> <p>【산업기술혁신사업 성과급(마일리지) 지급 관련】 -②</p> <p>◦ 간접비가 납부된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과제 총 61건의 연구책임자 연인원 61명에게 마일리지 합계 58,915,200원을 사용토록 통보한 후 이들이 청구한 합계 57,692,220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고,</p> <p>- 특히, 간접비가 납부된 과제 총 31건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 연인원 31명에게 성과급(마일리지) 합계 61,077,300원 통보</p> <p>【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5항 관련 ‘별표2’, 연구개발능률성과급</p>	<p>< ①, ② 관련 ></p> <p>◦ 기관 경고</p> <p>< ① 관련 ></p> <p>◦ 시정(회수)</p> <p>- 2014.12.1.부터 2016.12.31.까지 간접비가 납부된 국가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초과지급한 성과급 합계 164,197,156원에 대하여 간접비 납부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성과급(연구개발능률성과급, 마일리지)을 재산정하여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p>◦ 통보</p> <p>- 2017.1.1.부터 2017.12.31.까지 간접</p>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적용원칙 종합안내(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p>	<p>비가 납부된 국가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지급 중인 성과급(연구개발능력성과급, 마일리지)이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성과급을 재산정하거나 기초과한 경우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음 그 결과와 최종 집행실적을 제출하기 바람</p> <p>- 국가연구개발과제별 간접비 납부규모에 따라 산정하고 있는 성과급 지급기준을 관련 규정 등에 맞도록 개정하고, 향후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성과급은 간접비의 10%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기 바람</p> <p>< ② 관련 ></p> <p>◦ 시정(회수)</p> <p>- 2014.12.1.부터 2016.12.31.까지 간접비가 납부된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과제에 대해 지급한 성과급(마일리지) 합계 34,098,490원을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p>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하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1.1.부터 2017.12.31.까지 간접비가 납부된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과제에 대해 통보한 성과급(마일리지) 사용액 지급을 중단하거나, 기 지급한 성과급(마일리지) 사용액에 대해서는 관련자들로부터 회수 등 적정 조치후 그 결과를 제출하기 바람
<p>연구개발능률성과급 산정 및 지급 부적정 (2018. 충북대)</p>	<p>【연구개발능률성과급 산정에 관한 사항】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R&D과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계획’을 임의로 수립하여 교원 1,013명(연인원)에게 연구개발능률성과급 합계 2,474,294천원 지급 <p>【연구개발능률성과급 추가지급에 관한 사항】 -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개 연구소가 배분받은 간접비 중 일부를 교원 156명(연인원)에게 연구개발능률성과급으로 합계 211,649천원 추가 지급 <p>【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적용기준 종합안내(국가과학기술위원회, '12.9)】</p>	<p><①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경고 <p><②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3명) <p><①, ②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액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바람
【입시·학사】		
<p>전임교원 강의시간 배정 부적정 (2021. 금오공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8명에게 주당 3일 미만으로 강의시간을 배정 <p>【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 금오공과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116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시간 배정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주 3일 이상 배정하기 바람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주당 교수시간 배정 부적정[겸임교원 등] (2021. 금오공대)	◦ 교원 67명에게 주당 최대 교수시간보다 적게는 1시간에서 많게는 5시간까지 합계 297시간을 초과하여 수업을 배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 금오공과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116조】	◦ 기관경고
전임교원 수업시간 未준수 등 직무태만 (2019. 순천대)	◦ 교수 ◇◇◇이 학기당 수업시간 가운데 많게는 61.7%에서 적게는 33.3.%에 해당하는 시간의 수업을 하지 않는 등 직무 태만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2장, 고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 순천대학교 학칙 제42조】	◦ 기관경고 ◦ 2번에 포함 (중징계 1명) ◦ 통보
전임교원 책임강의시수 미달 배정 (2020. 강릉원주대)	◦ 책임시간 면제대상이 아닌 교수에게 책임시간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유로 2018학년도에는 책임강의시수를 6.6시간 미달 배정하고 2019학년도에는 11.6시간 미달 배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 강릉원주대학교 학칙 제51조, 강릉원주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51조】	◦ 경고(5명)
전임교원 강의시간 배정 부적정 (2019. 한국교통대)	◦ 교원 14명에게 주당 3일 미만으로 강의시간을 배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 한국교통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65조의2 및 제65조, 한국교통대학교 전임교원 강의책임시간 감면 지침】	◦ 기관경고 ◦ 통보 - 강의시간 배정 시 주당 3일 이상 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바람
전임교원 책임강의시간 未준수 (2019. 제주대)	◦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8학년도 2학기까지 교원 20명이 연간 책임강의시간 시간 未준수 및 교원 19명이 학사과정 강의시간 未준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 제주대학교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의2】	◦ 경고(29명)
전임교원 강의책임시간 未보충 (2018. 충북대)	◦ 교수 1명이 2015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강의책임시간(주당 9시간) 未보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 충북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53조】	◦ 경고(1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강의계획서 미입력 및 지연 입력 (2021. 금오공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 77명이 184개 과목에 대한 강의계획서를 종합정보시스템에 未 입력 또는 기한 이후 입력 <p>【금오공과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113조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경고
총장 未승인 교외교육 개설·운영 및 금품 등 수수 (2019. 순천대)	<p>【총장 未승인 교외교육(스키) 실시에 관한 사항】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 5명이 강의계획서에 없는 교외 스키수업을 총장 승인 없이 실시 <p>【교외교육(스키) 경비 징수에 관한 사항】 ---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매학년도 2학기에 개설한 9개 수업을 운영하면서 교외실습 참여학생(711명)의 스키실습경비 합계 151,488,000원을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아 지출 처리 <p>【스키수업 관련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 수수에 관한 사항】 -----③</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 5명이 2016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강원도 스키장에서 교외수업을 실시하면서 교통·숙박·음식물 합계 938,000원 상당의 금품 등 수수 <p>【순천대학교 교학 규정 제49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순천대학교 학칙 제62조,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순천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p>	<p>【①, ③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징계(4명) <p>【③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징계(1명) <p>【②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등 교육과정 운영에서 필요한 실습 경비를 부적정하게 징수한 사례를 통보하니 관리방안을 마련·시행 하기 바람 <p>【③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교수 △△△ 등 ◆◆과 관련자 5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위반, 공직자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관련업체 대표 ○○○와 ⊙⊙⊙는 같은 법 제8조 제5항 위반 혐의로 각각의 관할법원에 과태료 부과 요구하기 바람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교수계획서 전산망 未게시 (2019. 제주대)	◦ 교원 46명이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1학기까지 123개 교과목 수업계획서 교내 전산망 未게시 【제주대학교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	◦ 기관경고
수업계획서 전산망 未게시 (2019. 순천대)	◦ 교원 540명이 2015학년도 1학기부터 2018학년도 1학기까지 746개 교과목 수업계획서 교내 전산망 未게시 【순천대학교 교학 규정 제43조】	◦ 기관경고
수업계획서 未입력 등 (2019. 군산대)	◦ 수업계획서를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기한을 초과하여 제출(교원 238명, 560개 과목) 【군산대학교 수업관리규정 제8조, 군산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21조】	◦ 기관경고
보강 未실시 및 초과강사료 수령 부적절 (2021. 금오공대)	◦ 휴·결강 75시간에 대하여 보강 未실시(교원 10명), 그 중 1명은 초과강의로 함께 2,145천원 수령 【금오공과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109조, 금오공과대학교 강사료지급 지침 제3조】	◦ 경징계(1명) ◦ 경고(1명) ◦ 주의(8명) ◦ 시정(회수) - 부당 수령한 초과 강의로 함께 2,145 천원을 당사자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보강 未실시 및 초과강사료 수령 부적절 (2020. 강릉원주대)	◦ 휴·결강 16시간에 대하여 보강 未실시(교원 6명), 그 중 3명은 초과강의로 함께 315천원 수령 【국가공무원법 제58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강릉원주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50조, 강릉원주대학교 책임시수 및 강사료 지급 규정 제4조 및 제5조】	◦ 경고(1명) ◦ 주의(5명) ◦ 시정(회수) - 부당 수령한 초과 강의로 함께 315 천원 을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보강 未실시 및 초과강의로 수령 부적절	◦ 결강 14시간에 대하여 보강 未실시(교원 4명), 그 중 1명은 초과강의로 함께 32,000원 수령	◦ 주의(4명) ◦ 시정(회수)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2020. 춘천교대)	<p align="center">【춘천교육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26조, 춘천교육대학교 강사료 지급 규정 제5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정하게 지급된 초과강의료 합계 32,000원을 관련자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보강 未실시 등 (2019. 한국교통대)	<p>◦ 휴·결강 213.5시간에 대하여 보강 未실시(교원 23명), 그 중 20명은 초과강의료 합계 3,772,500원 수령</p> <p align="center">【한국교통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68조, 한국교통대학교 강의료 지급 규정 제4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징계(1명) ◦ 경고(4명) ◦ 주의(18명)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강의료 합계 3,772,500원을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보강 未실시 및 초과강의료 부당 수령 (2019. 군산대)	<p>◦ 휴·결강 42시간에 대하여 보강 未실시(교원 14명), 그 중 11명은 초과강의료 합계 840천원 수령</p> <p align="center">【군산대학교 수업관리 규정 제15조, 제17조, 군산대학교 강사료지급 규정 제4조, 군산대학교 수업운영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11명) ◦ 주의(3명)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 수령한 초과 강의료 합계 840천원을 당사자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보강 未실시 및 초과강의료 수령 부적정 (2019. 순천대)	<p>◦ 교원 42명이 보강 계획을 제출하고도 실제 보강을 未실시하고, 未보강 시간에 대한 초과강의료 합계 6,113,600원 수령</p> <p align="center">【순천대학교 교학 규정 제45조, 순천대학교 강사료 지급 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10명) ◦ 주의(32명)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정하게 지급된 초과강의료 합계 6,113,600원을 관련자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하기 바람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보강 未 실시 및 초과강의료 부적정 수령 등 (2018. 충북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3명이 未허가 국외여행으로 발생한 결강 48시간에 대하여 보강계획서 未제출 및 보강 未 실시 ◦ 교원 6명이 ‘공무 국외여행’ 등으로 결강한 13개 과목 합계 35시간에 대하여 보강계획서 未제출 및 보강 未 실시 ◦ 교원 14명이 ‘공무외 국외여행’ 등으로 결강한 21개 과목 54시간에 대하여 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도 보강 未 실시 ◦ 이중, 교원 13명이 미 실시한 보강 59시간에 대한 초과강의료 합계 2,128,000원 수령 <p style="text-align: center;">【국가공무원법 제58조, 충북대학교 교육공무원 국외여행 규정 제19조 내지 제20조, 충북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57조, 충북대학교 강사료 지급 규정 제4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3명) ◦ 주의(20명)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정하게 지급된 초과강의료 합계 2,128천원을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 하기 바람
보강일자 임의변경 (2020. 안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학년도 1학기부터 2020학년도 1학기까지 교원 37명이 기 제출한 보강계획서상 날짜에 보강하지 아니하고 보강일시를 임의 변경하여 강의 <p style="text-align: center;">【안동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64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주의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이 보강일을 임의로 변경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교육대학원 계절제 수업 일수 임의 조정 등 (2019. 공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12명은 '15학년도 1학기부터 '17학년도 2학기까지 수업일수를 임의로 단축 하는 등 계절제 수업 운영 부적정 <p style="text-align: center;">【고등교육법 제21조 제3항 및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공주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81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12명)
성적 정정 후 성적등급 분포비율 未 준수 (2021. 금오공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학년도 2학기부터 2019학년도 2학기까지 교원 2명이 교과목 A등급 이상 분포 비율을 초과하여 학점을 부여하였고, OO처는 성적 분포 비율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이를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2명) ◦ 주의(3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 align="center">【금오공과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165조제2항, 제175조제3항, 제175조제5항】</p>	
<p>성적 정정 절차 및 정정 후 성적등급 분포비율 未준수 (2019. 제주대)</p>	<p>【성적 정정 절차 未준수】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1학기까지 총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총 299건의 성적 정정을 승인하여 해당 학부로 통보 <p>【성적 정정 후 성적등급 분포비율 未준수】 --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1학기까지 교원 30명이 학생 59명의 성적을 정정함에 따라 각 성적등급 분포비율을 초과하여 학점 부여 <p align="center">【제주대학교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46조 및 제47조】</p>	<p>【①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주의 <p>【②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30명)
<p>재수강 학생 성적 부여 부적정 (2019. 순천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학년도 2학기부터 2017학년도 2학기까지 대학 컨소시엄 사이버강좌로 교과목을 재수강한 학생 18명에게 A+ 학점 부여 <p align="center">【순천대학교 학칙 제49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4명) 주의(1명)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목을 재수강한 학생에게 A+ 학점을 부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 시행하기 바람
<p>국외대학 이수과목 성적 인정 부적정 (2018. 충북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46명이 6개 국외대학에서 이수한 44개 과목의 성적을 관련 규정보다 높게 인정 <p align="center">【고등교육법 제23조, 충북대학교 학칙 제61조, 충북대학교와 다른 대학간의 학생수학에 관한 규정 제9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경고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 46명이 국외대학에서 이수한 44개 과목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성적을 부여하기 바람
<p>학점인정 대체 자격부적정부여등 (2019. 부경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목의 학점인정 대체자격에 국가자격이나 국가공인 민간자격이 아닌 'MOUS' 등 17개 자격을 포함하여 학생 722명에게 학점부여 <p align="center">【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5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4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경고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출석미달자 학점부여 부적정 (2021. 금오공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학년도 1학기에 출석미달자 1명에게 성적을 'B+'로 부여 <p>【금오공과대학교 계약학과 학사운영 규정 제25조, 금오공과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165조제4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1명)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1명에게 부여한 학점을 규정에 맞게 처리하기 바람
출석미달자 학점부여 부적정 (2020. 강릉원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학년도 1학기부터 2018학년도 2학기까지 교원 46명이 출석미달자 80명에게 성적을 'B+ ~D0'로 부여하고 그 결과 장학금 수혜기준에 미달하는 학생 9명이 국가장학금 등 합계 10,341,000원을 지원받음 <p>【강릉원주대학교 학칙 제61조, 강릉원주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58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시행 안내, 강릉원주대학교 장학금 관리 지침 제6조, 별표2, 별표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46명)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81명에게 부여한 학점을 규정에 맞게 처리하기 바람 <p><별도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보(한국장학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미달자에게 국가장학금이 지급된 사례를 통보하니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람
부당 출석처리 및 학점 부여 (2019. 제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8학년도 1학기까지 교수 3명은 본교 소속 직원 2명이 결석하였는데도 총 99회에 걸쳐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고 총 수업시간의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않은 직원 2명의 16개 교과목 성적을 A+ 부터 A0까지 부여 <p>【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주대학교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주대학교 학칙 제25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징계(1명) 경징계(2명)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2명에게 부여한 16개 과목의 학점을 취소 및 'F'학점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 「학칙」 등에 따라 대학원 수료 학점에 미달될 경우 학위여를 취소하기 바람
재이수 학생 학점 부여 (2019. 제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1학기까지 교원 17명이 교과목을 재이수한 학생 20명에게 A-부터 A+ 까지 학점부여 <p>【제주대학교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의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17명)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20명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학점을 부여하기 바람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추가시험 응시 학생 학점 부여 (2019. 제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학년도 2학기에 교원 6명이 추가시험 응시한 학생에게 A-부터 A0까지 학점부여 <p style="text-align: center;">【제주대학교 학칙 제55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6명)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OO 학생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학점을 부여하기 바람
조기취업자 성적평가 자료 未보관 (2019. 제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1학기까지 교원 21명이 조기취업자 학생 49명의 성적 부여 관련 자료를 未보관 <p style="text-align: center;">【제주대학교 학칙 제26조, 제주대학교 조기취업자 학점 인정에 관한 지침 제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21명)
제적 학생 등록금 未반환 (2020. 강릉원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2학기까지 13명의 학생이 미복학 등의 사유로 제적되었음에도 기 납부한 등록금 20,017,510원을 未반환 <p style="text-align: center;">【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강릉원주대학교 학칙 제90조 및 제9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적된 학생들이 기 납부한 등록금 합계 20,017,510원을 학생 13명에게 반환하기 바람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적된 학생들이 별도 신청 절차없이 기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기 바람
제적 학생 등록금 未반환 (2019. 한국교통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학년도 1학기부터 2018학년도 2학기까지 6명의 학생이 미복학 등의 사유로 제적되었음에도 기 납부한 등록금 5,873,950원을 未반환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교통대학교 학칙 제43조 및 제44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적된 학생들이 기 납부한 등록금 합계 5,873,950원을 학생 6명에게 반환하기 바람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적된 학생들이 별도 신청 절차없이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기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기 바람
<p>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임의변경(未준수) (2020. 강릉원주대)</p>	<p>◦ 2017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대학입학전형 시행(기본)계획을 통해 기 공표한 O과 및 학생부 위주 종합전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등을 법령 제·개정이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또는 교육부)의 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모집요강에 반영·공표하고 임의 변경한 전용요소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을 실시</p> <p style="text-align: center;">【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4항 및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및 제5항】</p>	<p>◦ 기관경고</p> <p>◦ 통보</p> <p>- 기 발표한 대학 입학전형 시행 계획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을 진행하고, 관계 법령 제·개정 등 없이 시행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center;"><별도조치></p> <p>◦ 통보(대입정책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p> <p>-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 임의변경(미준수) 사례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람</p>
<p>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 재평가 未실시 (2019. 한국교통대)</p>	<p>◦ 지원자 5명에 대한 평가자 2인의 평가점수가 20점 이상 차이가 남에도 재평가 未실시</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교통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사정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3호, 2018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운영계획】</p>	<p>◦ 경고(1명)</p> <p>◦ 주의(3명)</p>
<p>농어촌 특별전형 지원 자격 검증 미실시 (2020. 강릉원주대)</p>	<p>◦ 2018학년도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합격자 7명에 대해 고등학교 졸업 시 까지의 지원자격 검증을 위한 증빙서류를 未징수</p> <p style="text-align: center;">【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2017~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2017~2020학년도 강릉원주대학교 수시·정시 모집요강】</p>	<p>◦ 주의(3명)</p>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지원자격 및 평가기준 미흡 (2020. 강릉원주대)	◦ 2019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 지원한 2명이 단체전 입상실적만 있고 실제 해당 경기에는 출전하지 않았음에도 지원자격을 부여하고 실제 경기 출전자와 동일하게 평가 점수를 부여하여 최종 합격자로 선발 【고등교육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 기관주의 ◦ 통보 -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지원자격 및 평가기준 등을 세분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기 바람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지원자격 및 평가기준 미흡 (2020. 강릉원주대)	◦ 2019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 지원한 2명이 단체전 입상실적만 있고 실제 해당 경기에는 출전하지 않았음에도 지원자격을 부여하고 실제 경기 출전자와 동일하게 평가 점수를 부여하여 최종 합격자로 선발 【고등교육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 기관주의 ◦ 통보 -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지원자격 및 평가기준 등을 세분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기 바람
대입 정원내 특별전형 운영 부적정 (2019. 한국교통대)	◦ 2016학년도부터 2029학년도까지 대입 정원내 특별전형을 운영하면서 대학 독자적 기준인 지자체장 상 수상자 전형을 차등적 보상 기준에 의한 전형인 다문화가정자녀·직업군인자녀 전형 등과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여 운영 【고등교육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 통보 - 대입 정원내 특별전형이 도입취지, 지원자격, 유형 등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기 바람 <별도조치> ◦ 통보(한국대학교육협의회)
최고경영자 과정(非학위 과정) 운영	◦ '15학년도 8월부터 '18학년도 2월까지 최고경영자 과정 출석미달자 274명에게 수료증 수여	◦ 경고(20명) <별도조치> ◦ 통보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부적정 (2019. 공주대)	【고등교육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공주대학교 학칙 제120조, 공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규정 14조 제18조, 공주대학교 테크노융합대학원 고경영자과정 운영 규정 제14조】	(평생학습정책과) - 최고경영자과정 출석 미달자 수료 사례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출석 기준 미달자 학점 부여 (2019. 제주대)	◦ 교원 4명이 총 수업시간 수의 4분의 3에 미달하게 출석한 학생 5명에게 C-부터 C0까지 학점 부여 【충북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51조】	◦ 경고(4명) ◦ 통보 - ○○○ 등 학생 5명에게 부여한 학점을 취소하고 'F'학점으로 처리하기 바람
출석 기준 미달자 학점 부여 (2018. 충북대)	◦ 교원 5명이 총 수업시간 수의 4분의 3에 미달하게 출석한 학생 6명에게 B+부터 D+까지 학점 부여 【충북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51조】	◦ 경고(5명) ◦ 통보 - ○○○ 등 학생 6명에게 부여한 학점을 취소하고 'F'학점으로 처리하기 바람
출석 미달자 성적 부여 (2019. 한국교통대)	◦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1학기까지 교원 6명이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에 미달되게 출석한 학생 8명에게 'B+ ~D+' 또는 'P'성적 부여 - 그로 인해, 2016학년도 2학기부터 2018학년도 1학기까지 장학금 수혜기준에 미달한 학생 3명에게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 합계 2,323천원 지원 【한국교통대학교 학칙 제70조, 한국교통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76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시행 안내, 한국교통대학교 국가장학금 II유형 지급 계획, 한국교통대학교 장학금 관리지침 제2조】	◦ 경고(6명) ◦ 통보 - ㉠㉠㉠ 등 학생 9명에게 부여한 학점을 취소하고 'F' 학점으로 처리하기 바람 <별도조치> ◦ 통보(한국장학재단)
출석 미달자 학점 부여 및 장학금 지급 부적정 (2019. 순천대)	◦ 2015학년도 1학기부터 2017학년도 2학기까지 교원 16명이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에 미달되게 출석한 학생 67명에게 'A+ ~D0' 또는 'S'성적 부여	◦ 경고(14명) ◦ 통보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 그로 인해,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7학년도 1학기까지 장학금 수혜기준에 미달한 학생 7명에게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 합계 7,857,000원 지원</p> <p>【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순천대학교 학칙 제49조, 순천대학교 장학사업의 운영에 관한 지침,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시행계획】</p>	<p>- ㉔㉔㉔ 등 학생 61명에게 부여한 학점을 취소하고 'F' 학점으로 처리하기 바람</p> <p><별도조치> (한국장학재단)</p> <p>◦ 통보</p> <p>- 기준 미달자에게 국가장학금이 지급된 사례를 통보하니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람</p>
<p>학사 경고자 특별상담 未 실시 (2019. 한국교통대)</p>	<p>◦ 2017. 2학기부터 2019. 1학기까지 교수 71명이 학사경고를 받은 134명에 대해 특별상담 또는 추가 특별상담을 未 실시</p> <p>【한국교통대학교 학칙 제105조, 한국교통대학교 학생 지도 교수제 운영 지침 제4조】</p>	<p>◦ 기관경고</p> <p>◦ 통보</p> <p>- 학칙 및 관련 지침 등에 따라 학사 경고자 특별상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기 바람</p>
<p>학습지원 프로그램 未 이수자 관리 부적정 (2018. 충북대)</p>	<p>◦ 학사 경고 기준(1.75) 미만의 평점을 취득하고도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 376명에 대해 차년도 수강신청 未 제한</p> <p>【충북대학교 학칙 제70조,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45조의 2】</p>	<p>◦ 경고(3명)</p>
<p>현장실습계약 체결 기한 未 준수 (2019. 공주대)</p>	<p>◦ '15학년도 1학기부터 '17학년도 2학기까지 재학생 86명이 56개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함에 있어 현장실습 시작일 7일 전까지 현장실습 계약 未 체결</p> <p>【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p>	<p>◦ 기관주의</p>
<p>현장실습</p>	<p>◦ 2015 ~ 2017학년도까지 현장실습 대상이 아닌</p>	<p>◦ 경고(1명)</p>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대상학생 선정 부적정 (2019. 부경대)	학생65명을 선정하여 현장실습 실시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교육부, 2013), 부경대학교 현장실습 지침】	
현장실습 현장지도 미실시 (2020. 안동대)	◦ 2017학년도 여름학기부터 2019학년도 겨울학기까지 해당 학기에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 총 284명에 대하여 현장지도 未실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15조제4항, 안동대학교 현장실습 운영 규정 제12조, 안동대학교 인턴십 운영지침 제8조】	◦ 경고(15명) ◦ 주의(5명)
현장실습 현장지도 미실시 (2019. 한국교통대)	◦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2학기까지 해당 학기에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 총 66명에 대하여 현장지도 未실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9조의3,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15조제4항, 한국교통대학교 현장실습 운영 지침 제17조제2항】	◦ 경고(25명)
현장실습 운영 부적정 (2019. 제주대)	【전공 불일치 현장실습 운영】 -----① ◦ 전공 관련성이 없는 실습기관에서도 현장실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고등교육법 제22조제1항,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5조】 【현장지도 未실시】 -----② ◦ 지도교수 44명 및 현장실습 담당부서 교직원 5명이 2017학년도 1학기부터 2018학년도 동계학기까지 현장실습생 244명(144개 실습기관)에 대하여 현장지도 未실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15조제4항, 대학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제주대학교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지침 제21조】 【상해보험 계약 체결 지연 등】 -----③ ◦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①관련】 ◦ 기관경고 ◦ 통보 - 상위 법령에 부합하게 자체 지침을 개정하고, 현장실습과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②관련】 ◦ 경고(42명) 【②,③관련】 ◦ 경고(7명) 【③관련】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하계학기까지 현장실습생 533명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 지연 또는 未체결</p> <p>【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16조, 대학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제주대학교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지침 제2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10명)
<p>현장실습 운영 부적정 (2019. 군산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 학생에 대한 현장지도 未실시(지도교수 74명), 일부 실습기관과의 협약 및 보험계약 지연 체결 <p>【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대학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군산대학교 현장실습수업 운영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경고(2명)
<p>현장실습생 상해 보험 등 未가입 (2019. 부경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 ~ 2017학년도까지 학생 1,221명의 현장실습 상해보험 등 未가입 <p>【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2017-115호) 제16조,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교육부, 2013), 부경대학교 인턴십 및 산학협동 교육프로그램 교과목 운영세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통보 <p>-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 가입 등 보호조치가 확보될 수 있도록 각 학부(과)별로 개설·운영 되는 현장실습을 통합 관리하는 등 상위규정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바람</p>
<p>현장실습 현장지도 未실시 (2018. 충북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 70명이 현장실습생 292명, 136개 실습기관에 대한 현장지도 未실시 <p>【대학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교육부, 2013, 2017), 충북대학교 현장실습 운영지침 제11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경고 ◦ 통보 <p>- 충실한 현장지도 등 현장실습 지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p>
<p>해외과건 교환학생 선발 부적정 (2021. 금오공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학 성적 기준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 4명을 해외과건 교환학생으로 선발 <p>【금오공과대학교와 다른 대학교 등과의 학생교류·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제5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3명)
<p>성적기준 미달자 근로장학생 추천 (2021. 금오공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 1명에게 근로장학생을 추천하여 장학금 640천원을 지급 <p>【2018학년도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국립대학 에너지지킴이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2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지급 요건 未장충족자 장학금 지급 (2019. 한국교통대)	<p>【징계 처분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신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 성적우수 장학금 628,750원 지급 <p>【취득학점 미달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학점이 16학점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2,105,000원 지급 <p>【한국교통대학교 학칙 제110조, 한국교통대학교 장학금 규정 제11조, 한국교통대학교 장학금 관리지침 제2조】</p>	<p>【①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3명) <p>【②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3명)
장학금 지급 부적정 (2019. 제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정학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 장학금 합계 1,541,800원 지급하고 성적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에게 학생회 임원 장학금 1,312,000원 지급 <p>【제주대학교 장학금 규정 제9조, 제10조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4명)
성적 기준 미달자 장학금 지급 (2018. 충북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 8명에게 장학금 합계 15,748,500원 지급 <p>【충북대학교 등록금 재원 장학금 관리 지침 제6조 및 별표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9명)
영어능력우수장학금 지급 부적정 (2019. 부경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 2명이 TOEIC 기준 성적에 미달한 학생 2명을 영어능력우수장학금 대상자로 추천 <p>【대학원 장학금 관리지침, 2015~2018학년도 일반대학원 장학금 장학생 선발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6명)
교직과정 교육봉사활동 부당 인정 등 (2019. 군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과정 교육실습영역 교육봉사활동계획서도 제출받지 않고 교육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로 작성된 ‘교육봉사활동인정서’만을 제출받아 필수학점 2학점 및 무시험검정 영양교사(2급) 자격 부여 ○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3명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지 않은 군산대학교학생 3명에게 교육봉사활동인정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봉사활동을 하지 않고 ○○○ 등 3명이 부여받은 학점에 대해 학칙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기 바람 <p><별도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보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교원 자격검정 실무편람(2013~2017),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5조,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5조】</p>	<p>(교육양성연수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봉사활동을 하지 않고 학점을 취득한 사례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p>【충남교육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징계(1명) ◦ 경징계(2명) ◦ 통보(문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봉사활동인정서’ 허위 작성 등 방법으로 군산대학교 총장의 학사업무를 방해한 ○○○와 ○○○○에 대해 취업규칙 등 자체 규정에 따라 ‘문책’하기 바람 <p>◦ 고발</p>
<p>교직과정 교육봉사 활동확인서 허위제출 등 (2019. 순천대)</p>	<p>【순천대학교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범대학·교육대학원·교직과정 이수예정자에게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하기 전에 계획서를 제출받아 활동기관 및 활동내용의 인정 여부 未확인 <p>【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대학원 영양교육전공 학생 2명이 자신이 소속된 학교에서 교육봉사활동(60시간)을 한 것처럼 기재하고 몰래 학교장 직인을 날인하여 순천대학교에 제출함으로써 이수학점(2학점)을 부여받고, 석사학위 및 무시험검정으로 영양교사(2급) 자격 취득 <p>【학교장 직인 관리에 관한 사항】 -----③</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등 2개교의 학교장 직인 관리자 2명이 소속 교육공무직 영양사 2명이 허위로 작성한 교육봉사활동확인서에 학교장 직인을 찍을 수 있게 하는 등 직인 관리소홀 	<p>【①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봉사활동을 하지 않고 ◇◇◇, ○○○이 부여 받은 학점에 대해 학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기 바람 <p><별도조치></p> <p>(교원양성연수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봉사활동을 하지 않고 학점을 취득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1’, 교원자격 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관련 ‘별표3’,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6조,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제10조·제12조】</p>	<p>한 사례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②관련】 <별도조치> (전라남도교육청) ◦ 통보(문책_2명)</p> <p><별도조치> ◦ 고발</p> <p>【③ 관련】 <별도조치> (전라남도교육청) ◦ 주의(2명)</p>
<p>교육 봉사활동 확인서 미보존 (2020. 춘천교대)</p>	<p>◦ 총 3명이 교사자격 취득을 위하여 제출한 총 54시간의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를 未보존</p> <p>【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6조제9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2015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국가기록원), 2018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교육부)】</p>	<p>◦ 경고(5명)</p>
<p>기록물 未보관 및 계절학기 수업 未 실시 등 (2019. 한국교통대)</p>	<p>◦ 2018학년도 및 2019학년도 하계계절학기 과목에 대한 출석부 및 성적산출자료를 학과에 未제출·보관</p> <p>- 특히, 2018학년도 하계계절학기 ‘E-비즈니스의 이해’ 과목을 담당하면서 총 45시수 중 16시수의 수업을 하지 않고, 강의하지 않은 시수에 대한 강의료 합계 528,000원 지급</p>	<p>◦ 경징계(1명) ◦ 시정(회수) - 부당하게 수령한 계절학기 강의로 합계 528,000원을 관련자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p>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국가공무원법 제56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조·제26조제1항, 2018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교육부), 한국교통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76조제4항·제88조, 고등교육법 제22조·제21조제3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한국교통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70조제2항, 한국교통대학교 강의관리 지침 제33조제1항】</p>	바람
<p>계약학과 학사 운영 부적정 (2018. 충북대)</p>	<p>【계약학과 학사운영 관련 정보 산업체 未통보】 -① ◦ 계약학과 재학생 162명의 학사관련 정보를 학기 종료 후 재직하고 있는 20개 산업체에 未통보</p> <p>【계약학과 운영요령(교육부 지침, 2015. 11. 9. 개정) 제14조】</p> <p>【재교육형 계약학과 재학생 재직 현황 未확인】 -② ◦ 계약학과 재학생 119명에 대해 산업체 재직 현황 未확인</p> <p>【계약학과 운영요령(교육부 지침) 제8조】</p>	<p>< ①, ② 관련 ></p> <p>◦ 경고(12명) < ① 관련 ></p> <p>◦ 주의(5명) < ② 관련 ></p> <p>◦ 주의(2명)</p>
<p>0원 교육과정 신규개설 未보고 (2021. 금오공대)</p>	<p>◦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020학년도 1학기까지 총29개 교육과정을 신규개설하면서 교육부 未보고</p> <p>【평생교육법 제30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4조,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설치 변경 보고 및 운영 시 참고사항 알림】</p>	◦ 경고(4명)
<p>평생교육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 운영위원회 未심의 (2020. 춘천교대)</p>	<p>◦ 2019학년도 2학기에 2개 강좌를 개설하면서 운영위원회의 심의 없이 교육과정을 편성·운영</p> <p>【춘천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규정 제6조】</p>	◦ 주의(3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평생교육원 운영 부적정 (2019. 한국교통대)	◦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2학기까지 총 15개 과정을 교외에 소재한 민간 시설에서 운영 【평생교육법 제29조,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운영 철저】	◦ 경고(10명)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개설 未보고 (2019. 한국교통대)	◦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2학기까지 총7개 과정 개설을 교육부 未보고 【평생교육법 제30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4조,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설치 변경 보고 및 운영 시 참고사항 알림】	◦ 주의(10명)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변경사항 未보고 (2019. 제주대)	◦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여름학기까지 총440개 과정 개설·폐지를 교육부 未보고 【평생교육법 제30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4조,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설치 변경 보고 및 운영 시 참고사항 알림】	◦ 주의(9명)
평생교육원 강좌 수강 부적정 (2020. 안동대)	◦ 배우자가 수강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이용자 카드를 임의 제공하여 총 49회에 걸쳐 배우자가 강좌를 무료로 수강 【국가공무원법 제56조, 평생교육법 제30조제1항, 안동대학교 부설평생교육원 규정 제14조, 종합스포츠센터 회원가입 약관 제15조】	◦ 경고(1명) ◦ 시정(회수) - 평생교육원 종합 스포츠센터 강좌를 무단으로 이용한 관련 자로부터 학습비 1,350천원을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수료 사정 부적정 (2019. 제주대)	◦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8학년도 여름학기까지 총 7개 과정에서 수료사정 처리 미숙으로 수강생 7명의 수강시간이 수료기준에 미달되는데도 수료 처리하고, 수료기준을 충족한 수강생 2명은 미수료 처리 【평생교육법 제30조, 제주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규정 제18조】	◦ 주의(8명) ◦ 통보 - 수료기준 미달자 및 충족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대학부설 평생 교육원 교육과정	◦ 평생교육원은 총17개 교육과정을 신규 개설·운영하면서 교육부 未보고	◦ 경고(6명) <별도조치>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신규개설 未보고 (2019. 부경대)	【평생교육법 제30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4조,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설치 변경 보고 및 운영 시 참고사항 알림】	(평생학습정책과) ◦ 통보 - 신규개설 평생교육 과정 미보고 현황을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평생교육원 민간자격 표시의무 未준수 (2020. 안동대)	◦ 10개 민간자격에 대한 표시의무 未준수 【자격기본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5】	◦ 주의(4명)
평생교육원 민간자격 표시의무 未준수 (2019. 한국교통대)	◦ 51개 민간자격에 대한 표시의무 未준수 【자격기본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5】	◦ 주의(13명)
평생교육원 민간자격 표시의무 未준수 (2019. 군산대)	◦ 26개 민간자격에 대한 표시의무 未준수 【자격기본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5】	◦ 주의(7명)
평생교육원 민간자격 표시의무 未준수 (2019. 제주대)	◦ 28개 민간자격에 대한 표시의무 未준수 【자격기본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5】	◦ 주의(9명)
평생교육원 민간자격 표시의무 未준수 (2018. 충북대)	◦ 광고 전단지(총 38개 과정, 35개 민간자격)에 민간자격과정 표시의무 未준수 【자격기본법 제33조,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1조】	◦ 주의(5명)
부설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부적정 (2018. 충북대)	◦ 교사 2명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없이 학생 3명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정정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19조】	◦ 경고(5명)
부설고등학교 수행평가 점수 부여 부적정	◦ 교사 4명이 학생 36명에게 수행평가 영역별 배점기준에 없는 점수 부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 경고(1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2018. 충북대)	<p>별지 제9호,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2017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 제8조 및 제18조,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2017학년도 교과별 평가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3명)
<p>교육연수원 직무연수과정 운영 부적정 (2019. 제주대)</p>	<p>【직무연수 이수기준 미달자 이수 처리에 관한 사항】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강생 4명의 실제 수강시간이 수료 사정 기준에 미달되었는데도 낙제로 처리하지 않고 이수처리 <p>【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7조·제9조,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 제16조】</p> <p>【직무연수 이수 기록물 未보관에 관한 사항】 -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과정의 출석부 未보관 <p>【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조·제26조제1항 관련 별표1,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p>	<p>【①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4명)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연수 이수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 등 4명을 낙제 처리하기 바람 <p>【②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석부 등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준수하는 등 기록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p>교육연수원 운영 부적정 (2019. 순천대)</p>	<p>【직무연수 이수기준 미달자 이수 처리에 관한 사항】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직무연수 참가자 7명의 실제 수강시간이 수료 사정 기준에 미달되었는데도 낙제로 처리하지 않고 이수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 직무연수과정에서는 규정과 상이한 이수기준을 공고하여 운영 <p>【연수원운영위원회 未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천대학교 사범대학부설 교육연수원이 2018. 5. 감사일 현재까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직무연수 등 연수과정 운영 <p>【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7조·제9조, 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교육연수원규정 제18조 제2항·제19조·제20조·제21조】</p>	<p>【①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4명) ◦ 주의(2명)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연수 이수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 등 7명을 낙제 처리하기 바람 <p><별도조치> (전라남도교육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천대학교 사범대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학부설 교육연수원 위탁 직무연수 이수기준 미달자 이수 처리 사례를 통보하니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람</p> <p>【②관련】</p> <p>◦ 기관경고</p>
<p>직무연수 운영 부적정 (2018. 충북대)</p>	<p>◦ 총 이수 시간의 90% 이상 미수강시 낙제임에도, ‘80% 이상 수강 시 이수’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총 76개 직무연수 과정에 적용</p> <p>- 직무연수 4개 과정, 교사 5명의 실제 수강시간이 이수기준 미달임에도 이수한 것으로 처리</p> <p>【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6조 내지 9조,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수원 규정 제17조】</p>	<p>◦ 경고(10명)</p>
<p>○운영 부적정 (2020. 춘천교대)</p>	<p>【운영위원회 미심의 현장체험학습 교육과정 실시에 관한 사항】-①</p> <p>◦ 2017년부터 과학영재교육원 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현장체험학습을 매년 운영</p> <p>【영재교육 진흥법 제13조, 춘천교육대학교 O규정 제7조제6항】</p> <p>【교외교육 경비 징수에 관한 사항】-----②</p> <p>◦ 총 25명의 실습경비 합계 159,200천원을 대학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개인통장으로 입금 받아 지출처리</p>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2017년 강원영재교육 추진계획】</p>	<p>【①,②,③ 관련】</p> <p>◦ 경징계(1명)</p> <p>【③ 관련】</p> <p>◦ 시정(회수)</p> <p>- 부당하게 지급된 여비교통비 1,000천원을 관련자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p> <p><별도조치></p> <p>◦ 통보(강원도교육청)</p>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공무국외여행 관련 절차에 관한 사항】 ----③</p> <p>◦ 공무국외여행으로 승인받기 위해 공무 국외출장 계획서에 출장경비를 0에서 1,000천원 부담한다고 허위 기재하여 공무국외여행으로 승인 받은 후, 예산을 변경하여 여비교통비 1,000천원을 수령</p> <p>【교육부 공무국외여행규정 제3조, 제4조, 제7조, 춘천교육대학교 공무(외) 국외여행 지침】</p>	
<p>과학영재교육원 학사운영 부적정 (2019. 군산대)</p>	<p>◦ 과학영재교육원 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교과과정 편성 및 일부 과정 교재 선정</p> <p>◦ 영재교육을 받은 초·중등학생 총 304명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자료를 해당 학교장에게 송부하지 않음</p> <p>【영재교육 진흥법 제11조의4 및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6조, 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규정 제9조】</p>	<p>◦ 경고(4명)</p>
<p>과학영재교육원 학생 관리 부적정 (2018. 충북대)</p>	<p>◦ 2015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 총649명(초등심화 280명, 중등심화 320명, 사사과정 49명)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자료 未작성 및 未관리</p> <p>【영재교육 진흥법 제11조,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충북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규정 제16조】</p>	<p>◦ 경고(8명)</p>
<p>대학입학전형 친인척 신고서 평가종료 후 제출 (2021. 금오공대)</p>	<p>◦ 회피 자진신고 대상임에도 ‘친인척 신고서’를 전형 절차가 모두 종료된 후 지연 제출</p> <p>【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회피·제척 가이드라인】</p>	<p>◦ 주의(1명)</p>
<p>입학전형 회피 신청자 미배제 (2020. 안동대)</p>	<p>◦ 특수 관계가 있는 교직원 4명이 ‘회피 자진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총 45개 모집단위별 입학전형의 서류 및 면접평가에 참여 시킴</p> <p>【안동대학교 회피·제척시스템 운영 지침, 안동대학교 회피·제척시스템 운영 계획】</p>	<p>◦ 경고(1명)</p> <p>◦ 주의(5명)</p>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입학전형 회피 및 제척 부적정 (2020. 춘천교대)	<p>【회피 신청자 미제척에 관한 사항】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피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정시모집 전형관련 업무 未총배제 <p>【회피 신청자 미회피에 관한 사항】 -----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피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총 9건의 입학전형 및 입학처 업무를 수행 <p>【춘천교육대학교 입학전형 관리지침 제17조】</p>	<p>【①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1명) <p>【②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의(1명)
대학원 외국인 특별전형 서류제출 기한 未준수 (2021. 금오공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학년도 대학원 외국인 특별전형에서 13명에게 필수 제출 서류를 서류제출 마감일이 지난 후에 제출하도록 하여 합격 처리 <p>【금오공과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2018학년도 금오공과대학교 전기 및 후기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3명)
일반전형 신입생 선발 부적정 (2021. 금오공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학년도 및 2021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사회통합전형 지원자가 모집 인원 기준이상임에도 사회통합전형 미선발 모집 인원 총 5명을 일반전형에서 추가로 선발 <p>【영재교육진흥원, 금오공과대학교 2019,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2명)
발명영재학급 학생선발 부적정 (2020. 춘천교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학교장 등의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원자 11명 합격처리하여 선발 <p>【춘천교육대학교 O 운영규칙 제4조, 충천교육대학교 O 교육대상자 선발 요강 2019학년도 춘천교육대학교 O 영재교육대상자 추가모집 요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3명)
교사자격증 자격기준 부여 부적정 (2020. 안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 2월부터 2019. 2월까지 영양교사 자격 기준을 ‘제1호’가 아닌 ‘제5호’로 발급(6명)하고 영어 정교사 자격기준을 ‘제5호’가 아닌 ‘제1호’로 발급(1명) <p>【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4명) 통보 - 졸업자 7명의 자격 기준 호수를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정정처리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2018년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	하여 자격증을 재발급 하기 바람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서류(영양사 면허증) 미구비 (2020. 안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졸업예정자 7명에 대하여 영영사 면허증 사본을 첨부케 하는 방법을 통해 소지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영양교사2급 교원자격증을 발급 <p style="text-align: center;">【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제3항】</p>	◦ 경고(4명)
교원 적성 및 인성 검사 판정 부적정 (2020. 춘천교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 적·인성 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학생 29명에 대해 부적합판정자 평가영역별 이수 프로그램 이수만으로 재검사 없이 적격 판정 <p style="text-align: center;">【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3명)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 1차 교직적성 및 인성 재검사를 실시하기 바람
대학원 졸업종합시험문제 출제 부적정 (2020. 안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2학기까지 교원 29명이 기 출제했던 문제를 반복 출제 <p style="text-align: center;">【안동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7조, 안동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제5조, 안동대학교 행정경영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24조,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8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28명)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종합시험에서 동일문제를 반복출제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을 철저히하기 바람
교육대학원 학위취득을 위한 자격시험 문제 출제 부적정 (2020. 춘천교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2학기까지 교원 11명이 기 출제했던 문제를 반복 출제 <p style="text-align: center;">【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9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11명)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 학위취득을 위한 자격시험 문제가 기준에 출제했던 문제 와 중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시행하기 바람
대학원 졸업종합시험문제 출제 부적정 (2019. 제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1학기까지 교원 25명이 기 출제했던 문제를 반복 출제 <p style="text-align: center;">【제주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제6조 및 제8조】</p>	◦ 경고(25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시설·재산】		
설계금액 예산액 초과 사전협의 미 실시 (2021. 금오공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5건의 설계금액을 교육부장관과 사전협의 없이 예산액보다 합계 616,665천원을 초과하여 실시 설계 <p>【국고금 관리법 제20조,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교육부), 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금오공과대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6명)
신축 국제교육관 공간 미활용 등 관리 부적정 (2021. 금오공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에 따른 운영 주체 선정 지연 등의 사유로 준공 후 498일이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 구체적인 용도를 확정하지 않고 공실로 관리 <p>【교육부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1조, 제3조 및 제11조, 금오공과대학교 공간관리 규정 제4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경고 통보 <p>- 공실로 관리하고 있는 공간에 대해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확정하고 용도에 맞게 실험실을 구축하기 바람</p>
공간관리 부적정 (2020. 강릉원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 11명이 퇴직한 후 교수연구실 등의 용도로 사용한 총 245.51㎡를 반납하지 않고 있음에도 공간사용부담금의 징수대상과 징수액 등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 공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지 않고 행·재정적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는 등 교사 공간을 방치 <p>【강릉원주대학교 공간관리 규정 제8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경고 통보 <p>- 공간사용료 미납부 사용료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와 공간사용부담금의 징수대상과 징수액 등의 세부 운영사항을 공간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기 바람</p>
공간 및 물품 관리 부당 (2019. 한국교통대)	<p>【공간관리에 관한 사항】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전 교수의 물건 보관 등 용도로 방치 <p>【한국교통대학교 공간사용 관리 규정 제2조, 제3조, 제13조】</p> <p>【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소유 재물 2점(데스크톱컴퓨터, 노트북컴퓨터)을 반출하려 한다는 유선 보고를 받고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 없이 이를 승인하여 위 물품 2점이 외부로 반출됨 	<p>【①,②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징계(1명) <p>【①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1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물품관리법 제26조, 제30조, 제31조 및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대학시설 공간관리 부적정 (2018. 충북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미나실 조성공사를 실시하면서 소방법 등 법적사항 未검토 및 공간 변경 사항 총장 未보고 【충북대학교 시설공간관리 규정 제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2명) ◦ 주의(2명)
가설건축물 등 설치 및 사용 부적정 (2021. 금오공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1개동을 설치하고, 이후 허가권자에게 공사완료 통보 없이사용 【건축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주의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설치된 가설 건축물을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처리하기 바람
관할청 미협외 가설건축물 설치 (2020. 춘천교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춘천시장과 협의없이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총 3개동을 설치하여 사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 제4조제1항, 건축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경고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청 협의없이 설치한 가설건축물 3개동에 대해 법령 등 규정에 맞게 적의 조치하기 바람
관할청 미협외 가설건축물 설치 (2020. 강릉원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릉시장과 협의없이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총 20개동을 설치하여 사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 제4조제1항, 건축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경고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청 협의없이 설치한 가설건축물 20개동에 대해 법령 등 규정에 맞게 조치하기 바람 <p style="text-align: center;"><별도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보(교육시설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은 가설건축물 설치 사례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관할청 未협외 가설건축물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29개동을 제주시장과 협의 없이 설치하여 창고 등 용도로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경고 ◦ 통보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2019. 제주대)	<p align="center">【건축법 제29조 제1항 및 제3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청 협의없이 설치한 가설건축물 29개동에 대해 철거 등 적의 조치하기 바람
가설건축물 등 설치 및 사용 부적정 (2019. 순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부터 2018. 5. 감사일 현재까지 컨테이너 등 11개동을 순천시장과 협의 없이 설치하고, 공사완료 통보 없이 사용 <p align="center">【건축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경고
시설공사 시공 부적정 (2021. 금오공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건의 공사에서 당초 설계내용과 다르게 시공되었는데도 그대로 준공처리 하여 공사비 합계 4,025천원 상당을 과다 지급 <p align="center">【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6항,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2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4명) ◦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정 시공 5건에 대하여 해당 시공업체로 하여금 재시공토록 조치하기 바람
시설공사 하자검사 부적정 (2021. 금오공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건의 공사에 대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최종 하자검사 未 실시 또는 하자검사조서를 未 작성 <p align="center">【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3명)
시설공사 시공 검사 부적정 (2020. 안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건의 부적정 시공에 대하여 재시공 未 요구 또는 공사비 감액 未 조치 <p align="center">【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6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2명)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정 시공 4건에 대하여 과다하게 지급된 공사금액 1,658천원을 OO(주)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정 시공 1건에 대하여 OO(주)로부터 하여금 재시공토록 조치하기 바람
시설공사 하자보수 미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건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未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1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2020. 춘천교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제4항 및 제35조제1항】	
시 설 공 사 하자보수 미실시 (2020. 강릉원주대)	◦ 3건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未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제4항 및 제35조제1항】	◦ 주의(2명)
시설공사 감독 부적정 (2020. 안동대)	◦ 6건의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일지 및 검측대상 未작성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5조】	◦ 주의(3명)
시설공사 감독 및 검사업무 부적정 (2020. 춘천교대)	◦ 4건의 시설공사를 준공하면서 미시공한 공사비 합계 7,366천원을 未정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 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6항】	◦ 경고(5명) ◦ 주의(1명) ◦ 시정(회수) - 중복계상 또는 미 정산된 공사비 합계 7,366천원을 시공업체 (4개)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시설공사 시공 부적정 (2019. 한국교통대)	◦ 업체가 당초설계와 상이하게 시공하였음에도 그대로 준공 처리하여 공사비 합계 5,218천원 상당을 더 지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 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6항】	◦ 주의(2명) ◦ 시정(회수) - 감액하지 않고 지 급한 공사비 합계 5,218천원 상당을 (주 OO)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시설공사 감독 및 검사업무 부적정 (2019. 제주대)	◦ 4건의 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 시정조치 없이 준공처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 14조,	◦ 경고(2명) ◦ 주의(2명) ◦ 시정(회수) - 미시공분 공사비 합계 57,627천원을 해 당업체로부터 회수하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 align="center">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6항】</p>	<p>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p>◦ 통보</p> <p>- OO공사와 관련하여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 관련업체로 하여금 재시공토록 조치하기 바람</p>
<p>내진보강 설계용역 검사 부적정 (2019. 제주대)</p>	<p>◦ OO성과물에 내진보강용장치가 연결되는 기존 구조부재 및 부착용 고정장치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시정도치 없이 위 성과물을 납품받고 준공처리</p> <p align="center">【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 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6항, 건축법 제48조제1항】</p>	<p>◦ 경고(1명)</p> <p>◦ 통보</p> <p>- 내진보강과 관련하여 내진보강용장치와 연결되는 기존 구조부재 및 부착용 고정장치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보수·보강 등 조치와 함께 설계용역업체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기 바람</p>
<p>건축물 화재 피난구조 설계도서 검수 부실 (2019. 순천대)</p>	<p>◦ □□연구소 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건물 지상1층 피난계단에 갑종방화문이 반영되지 아니한 설계도서를 납품받고도 그대로 검수 처리</p> <p align="center">【건축법 제49조 제1항,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6항】</p>	<p>◦ 주의(1명)</p> <p>◦ 시정</p> <p>- 관련 법령에 따라 피난계단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 바람</p> <p>◦ 통보</p> <p>- (주)◇◇◇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른</p>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부실 벌점 부과 등을 검토하기 바람 <별도조치> (순천소방서) ◦ 통보 - 화재 피난구조 부적정 사례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복층유리공사 설계수량 산정방식 미비 (2019. 제주대)	◦ 2014. 2.부터 2019. 5.까지 총 5건의 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창틀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창호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복층유리공사 수량을 산정함으로써 실제 시공면적이 물량내역서 대비 80.2%~82.5%에 그침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제3조, 제4조, 제5조)】	◦ 개선 - 복층유리공사 수량 산정과 관련하여 설계면적과 시공면적 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전문공사 계약체결 부적정 (2019. 군산대)	◦ 인테리어공사 등 전문공사업 미등록 업체와 전문공사 2건 계약 체결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경고(2명) ◦ 주의(1명) <별도조치> ◦ 고발
전문공사 계약 체결 부적정 (2018. 충북대)	◦ 전문공사 13건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들과 계약 체결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및 제9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 경고(6명) ◦ 주의(7명) <별도조치> ◦ 고발
‘관급자재구입및 설치’ 관련부당 지시등 (2019. 공주대)	◦ 대학본부 신축공사시 조달청 보완지시 등으로 ‘대학본부 관급자재(무대장치)’ 계약이 지연되던 중 계약상대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직원 1명은 계약상대자가 아닌 (주)000에 3,700천원 상당의 무대장치를 설치하게 함	◦ 경징계(2명) ◦ 시정(회수) - (주)000이 실제 구입 및 설치하지 아니한 3,700천원 상당을 위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 위 직원 1명은 계약상대자가 (주)000으로 최종선정되자 既설치된 3,700천원 상당의 무대장치 비용을 두 업체간 정산 처리하도록 부탁</p> <p>【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2항】</p>	<p>업체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p>
<p>시설공사 분할계약 부적정 (2018. 충북대)</p>	<p>◦ 4건의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 공사를 통합 발주하지 않고 분할 계약</p> <p>【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p>	<p>◦ 기관경고</p> <p>◦ 통보</p> <p>- 사업단 소속 회계 관계직원을 대상으로 시설공사 계약 관련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p>
<p>법정경비 사전정산 후 정산액 공사비 사용 (2021. 금오공대)</p>	<p>◦ 2018. 4.부터 2020.5.까지 건축공사 등 9건의 공사에 계산된 법정경비를 사후정산 하지 않고 사전에 정산하여 정산액 합계 226,677천원을 공사비로 사용</p> <p>【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91조, 제93조 및 제94조】</p>	<p>◦ 주의(7명)</p>
<p>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2021. 금오공대)</p>	<p>◦ 2018. 1.부터 2021. 1.까지 14건의 공사에서 계약상대자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안전관리비 합계 4,931천원을 감액·정산 未 실시</p> <p>【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제8조】</p>	<p>◦ 주의(11명)</p> <p>◦ 시정(회수)</p> <p>- 감액·정산하지 않은 안전 관리비 합계 4,931천원을 해당 시 공업체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p>청소용역 국민건강보험료 등 미정산 (2020. 강릉원주대)</p>	<p>◦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6건의 청소용역 완료 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 금액 확인 없이 3개 업체가 청구한 합계금액 181,883,860원을 O과에 전액 지급 요청</p> <p>【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3, 정부입찰·</p>	<p>◦ 경고(8명)</p> <p>◦ 주의(1명)</p> <p>◦ 통보</p> <p>- 정산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고</p>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계약집행기준 제94조, 2016~2017년도 강릉원주대학교 청소용역 입찰 일반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 3】	과다지급한 금액에 대 하여 관련업체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청소용역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 부적정 (2019. 제주대)	◦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청소용역 완료 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 금액 확인 없이 2개 업체가 청구한 합계금액 6,433,870원을 과다 지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3,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94조, 2016~2017년 제주대학교 청소용역 공고】	◦ 경고(4명) ◦ 시정(회수) - 과다지급된 국민건 강보험료 등 합계 6,433,870원을 00등 2개 업체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법정보험료 등 법정경비 정산 미실시 (2020. 강릉원주대)	◦ 총 8건의 시설공사를 준공하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합계 8,299천원을 未감액 【건설기술진흥법 제22조 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및 제8조,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	◦ 경고(7명) ◦ 주의(7명) ◦ 시정(회수) - 감액정산조정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 비·환경보전비 등 합계 8,299천원을 시공업체 (8개)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법정보험료 등 법정경비 정산 미실시 (2020. 춘천교대)	◦ 총 4건의 시설공사를 준공하면서 법정경비 합계 7,193천원을 未감액 【건설기술진흥법 제22조 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및 제8조,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	◦ 경고(1명) ◦ 주의(3명) ◦ 시정(회수) - 정산(감액)하지 않 은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경비 합계 7,193천 원을 시공업체(4개)로부 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 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시설공사비 정산 미실시 (2020. 강릉원주대)	◦ 총 4건의 공사에 대한 중복 계상 공사비 8,991천원을 감액하지 않고 준공처리	◦ 경고(3명) ◦ 주의(5명)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 align="center">【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6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계상 또는 미정산된 공사비 합계 8,991천원을 시공업체(4개)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p>시설공사 법정경비 정산 부적정 (2019. 한국교통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4건의 시설공사를 준공처리하면서 업체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법정경비 합계 13,291천원 상당을 未감액 <p align="center">【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및 제8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3명)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액정산하지 않은 환경보전비 1,174천원, 안전관리비 12,117천원 합계 13,291천원 상당을 3개 시공업체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li align="center" style="margin-top: 10px;"><별도조치> ◦ 고발 ◦ 통보(국세청)
<p>시설공사 제경비 정산 부적정 (2019. 군산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2건의 환경보전비 1,369천원, 공사 7건의 안전관리비 4,895천원 등 합계 6,364천원을 감액 정산·조정 없이 준공 처리 <p align="center">【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4명)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액정산·조정하지 않은 환경보전비 1,369천원과 안전관리비 4,895천원 합계 6,364천원을 (유)○○○ 등 시공업체(8개)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p>시설공사 제경비 정산 부적정 (2018. 충북대)</p>	<p>【환경보전비 정산에 관한 사항】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건의 공사에서 업체가 사용불가 항목 등으로 집행한 환경보전비 합계 6,409천원 未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9명)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액정산하지 않은 환경보전비 6,409천원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p> <p>【안전관리비 조정에 관한 사항】 -----②</p> <p>◦ 5건의 공사에서 업체가 사용불가 항목 등으로 집행한 안전관리비 합계 3,668천원 未감액조정</p> <p>【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p> <p>【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에 관한 사항】 ----③</p> <p>◦ 4건의 공사에서 사용내역이 없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계 7,246천원 未정산</p> <p>【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p>	<p>과 안전관리비 3,668천원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7,246천원 합계 17,323천원을 (주)○○○ 등 시공업체(11개)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p>시설공사 설계변경 단가 적용 부적정 (2021. 금오공대)</p>	<p>◦ 2건의 공사에서 설계변경 시 신규 품목의 단가를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계상하여 공사비 합계 595천원을 과다 지급</p> <p>【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3항제2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p>	<p>◦ 주의(3명)</p> <p>◦ 시정(회수)</p> <p>- 공사비 과다 지급액 합계 595천원을 해당 시공업체들로부터 각각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하기 바람</p>
<p>재해취약시설 안전관리 소홀 (2018. 충북대)</p>	<p>◦ 재해취약시설로 지정된 기숙사 6개동에 대하여 정기점검 未실시 및 관리카드 未작성</p> <p>【교육부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 지정·관리 지침(교육부, '14.2), 2017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계획(교육부, '17.10.30.)】</p>	<p>◦ 경고(1명)</p> <p>◦ 주의(1명)</p> <p>◦ 통보</p> <p>- 재해취약시설 점검·기록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p>
<p>재해취약시설 안전관리 소홀 (2018. 충북대)</p>	<p>◦ 재해취약시설로 지정된 기숙사 6개동에 대하여 정기점검 未실시 및 관리카드 未작성</p> <p>【교육부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 지정·관리 지침(교육부, '14.2), 2017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계획(교육부, '17.10.30.)】</p>	<p>◦ 경고(1명)</p> <p>◦ 주의(1명)</p> <p>◦ 통보</p> <p>- 재해취약시설 점검·기록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p>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미이수자 재교육 미실시 (2021. 금오공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미이수율이 평균 56%임에도 미이수자에 대한 재교육을 未실시 <p>【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주의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기 바람
연구실 활동종사자 안전교육·훈련 부적정 (2020. 강릉원주대)	<p>【교직원 교육 미실시에 관한 사항】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훈련대상자인 교직원 총 1,348명의 교육 未실시 <p>【대학(원)생 및 연구원 안전교육 미이수에 관한 사항】 -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위 연구활동종사자로 선정하여 실시한 대학(원)생·연구원 중 정기안전교육·훈련에서 83%, 신규 안전교육·훈련에서 33%가 교육 未이수 <p>【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2, 강릉원주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조 및 제10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경고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도부터 연구활동종사자에 속하는 교직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기 바람
연구실 활동종사자 안전교육·훈련 운영 등 부적정 (2020. 춘천교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훈련대상자인 교직원 총 108명의 교육 未실시 <p>【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제18조제2항, 2017 연구실안전법 해설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경고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립법령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2020년도부터 연구활동종사자에 속하는 교직원에 대해 규정에서 정한 시간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공동실험실습관 고가 실험실습기자재 활용 부적정 (2020. 강릉원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최대 3.8%로 활용하는 등 활용도가 낮은 고가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을 추진 <p>【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공동실험실습실 운영 규정 제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의(1명)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용률이 저조한 고가 실험실습기자재 3대에 대한 활용률을 제고하기 바람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p>공동실험실습관 고가 실험실습기자재 활용 부적정 (2020. 강릉원주대)</p>	<p>◦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최대 3.8%로 활용하는 등 활용도가 낮은 고가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을 추진</p> <p>【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공동실험실습실 운영 규정 제2조】</p>	<p>◦ 주의(1명)</p> <p>◦ 개선</p> <p>- 활용률이 저조한 고가 실험실습기자재 3대에 대한 활용률을 제고하기 바람</p>
<p>건설공사 품질관리 부적정 (2020. 안동대)</p>	<p>◦ 2건의 건설공사 추진 시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未계상 및 설계 도서에 未명시,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을 未설치 및 건설기술인을 未배치</p> <p>【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p>	<p>◦ 경고(4명)</p> <p>◦ 통보</p> <p>- 건설공사 추진 시 품질관리 관련법령 상의 절차를 준수하기 바람</p>
<p>소프트웨어 관리 부적정 (2020. 안동대)</p>	<p>◦ 총 2,218종을 구입하여 설치하고도 소프트웨어 관리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 未작성</p> <p>【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제5조】</p>	<p>◦ 경고(1명)</p> <p>◦ 주의(1명)</p>
<p>신기술 및 특허 적용공사 기술협약 未체결 (2019. 제주대)</p>	<p>◦ 2016. 2.부터 2018. 9.까지 신기술 등이 적용된 공사 5건에 대해 기술사용협약을 未체결</p> <p>【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제5조의2 제3항 및 제4항】</p>	<p>◦ 경고(4명)</p> <p>◦ 통보</p> <p>- 신기술 및 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 입찰 시 기술사용 협약 체결 등 관련법령 상의 절차를 준수하기 바람</p>